对型是 ANI ANE 734

- 2021년 하동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목 차〉

1.	인사기록 관리 소홀 등 인사관리 업무 부당처리	1
2.	징계의결요구 업무 부적정	13
3.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20
4.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부적정	30
5.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미이행	36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미이행	40
7.	불법산지전용 복구의무면제 및 산림단속업무 추진 부적정	46
8.	산지전용허가 등 사후관리 부적정	51
9.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등 사업장 행정조치 및 지도점검 부적정	56
10.	기간제근로자 채용 합격자 결정 소홀	61
11.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부적정	66
12.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72
13.	○○○○ 공급확대 지원사업 수행상황 점검 미이행 및 정산검사 부적정	77
14.	2019년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	82
15.	공유재산 매각 위법·부당 처리	86
16.	취득세 부과 및 감면 추징 누락	92
17.	재산세 감면 추징 누락 및 부과 처리 부적정	98
18.	○○○○○ ○○○○ ○○○○ 보조사업 관리·감독 등 부적정 ······	104
19.	00분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심사 및 정산 검사 미실시	116
20.	○○○○○○○○○ 운영비 예산편성 및 정산 등 부적정	120
21.	○○○○○○ ○○ 지원 사업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등 부적정…	129
22.	○○○ ○○○○조성사업 하도급 관리 등 부적정	133
23.	○○○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설치인가 등 추진 부적정	137
24.	○○○ ○○○ 기반시설 설치사업 준공검사 등 처리 부적정…	144
25.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 처리 부적정	150
26.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 토지소유자 동의율 확인 부적정 …	157
27.	○○○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6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훈계·주의·시정 요구

제 목 인사기록 관리 소홀 등 인사관리 업무 부당처리

소 관 기 관 하동군(○○과)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인사기록 관리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적정

가.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과에서는 신규임용, 승진, 징계 등 공무원의 임용사항이 있으면 인 사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인사기록을 관리하면서 매년 상·하반기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 승진임용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나. 인사기록 관리 소홀 및 보수지급 부적정

1) 관련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제6조(임용권자),「지방공무원 임용령」제10조(인사기록),「지방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행정안전부령)」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에 따르면 공무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등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유지·보관하여야 한다.

또한「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직위해제) 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2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직위해제된사람에게는 봉급의 50%만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30%만 지급하도록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에는 공무원에게 행한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보수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직위해제 처분이 소청심사위 원회의 변경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1)에는 보수를 소 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하동군 〇〇파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징계처분 내용과 승급·승진임용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승진, 급여 및 호봉(승급)관리를 하여야 하며,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취소가 되지 않는 한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과에서는 지방○○○○○ ▲▲▲의 경우 2020. 2. 11. 성 범죄 혐의로 '감봉1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인사기록카드(전자인사관리시스

¹⁾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경력평정) 제2항 제2호 다목.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동안은 소급 지급함

¹⁾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나) 생략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²⁾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기소유예 등 제외)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지 않고 있다가 1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일자 미상)이되어서야 전산입력을 하였다.

그 결과 승진(승급)임용 제한기간('20. 2. 11.~ '21. 9. 11. 19개월2)) 중인 2020. 7. 1. 16호봉에서 17호봉으로 호봉승급을 하게 되었고, 2020년 상·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등 3번에 걸쳐 승진후보자명부에도 등재가 되었으며, '감봉1월'에 대한 보수의 감액(1/3 감액)도 2021. 3월이 되어서야 하게 되는 등 인사기록 관리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되었다.

더욱이 '감봉1월' 징계처분 前인 2019. 8. 13. 같은 사유로「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4호3)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2. 31. 검찰의최종 수사결과「성매매처벌법」으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난 후 2020. 1. 9. 복직되었는데 이를「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29조에 따른직위해제의 무효·취소에 해당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의 직위해제 기간('19. ○○. ○○. ~ '20. ○○. ○○. 약 5개월)중 감액된 급여 9,438,310원을 2021. 4. 20.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그 이외에도 하동군 ○○과에서는 ■■■ 외 4명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등 인사기록을 2021. 7. 20. 감사일 현재까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입력하지 않거나 정년퇴직을 명예퇴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 제2호에는 징계처분의

^{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르면 감봉은 승진임용제한기간이 12개월이고 성범 죄인 경우 6개월을 가산함. 따라서 감봉1월+12개월+6개월=19개월이 됨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 생략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특히 음주운전·성폭력·성희롱·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동군 ○○과에서는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승진임용 제한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당해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인사 위원회 승진심사 안건자료로 상정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과에서는 지방○○○○○ ◆◆◆의 경우 2018. 7. 2. 성희롱사유로 '감봉3월' 처분을 받아, 감봉에 따른 15개월에 6개월을 가산하여 21개월이지난 2020. 4. 2.까지 승진임용이 제한됨에도 2018. 7. 2. '감봉3월' 처분 입력 당시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성비위 6개월 가산을 하지 않고 입력하는 등 [표 1]과 같이 ◆◆◆ 등 3명은 성비위 혐의자들임에도 승진(승급)임용 제한기간 6개월을 가산하지않고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다.

그 결과 2019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등에 등재하여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심사(2019. 12. 27.)" 등의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자료로 상정하였다.

[표 1] 징계처분 승진임용제한기간 6개월 미가산자 현황

구분	소속	현직급	성명	처분	사유	처분일	기입력 승진제한기간	비고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일)
1	000	000	***	감봉3월	성희롱	'18. 7. 2.	'19. 10. 2.	2019년 하반기 승진후보자명부 등재 (2019. 12. 27.)
2	000	000	•••	감봉3월	성희롱	'18. 7. 2.	'19. 11. 7.	2019년 하반기 승진후보자명부등재 (2019. 12. 27.)
3	000	000	$\Diamond \Diamond \Diamond \Diamond$	감봉1월	성매매	'20. 2. 11	'21. 3. 11	2020년 상·하반기 승진후보자명부 등재 (2020. 6. 26/2020. 12. 24.) 2021년 상반기 승진후보자명부 등재 (2020. 5. 31.등재)

2. 퇴직 제한사유 확인 소홀 및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부적정

가.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과에서는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신청자에 대해서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확인한 후 퇴직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임용하고 있다.

나. 퇴직 제한사유 확인 소홀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정계사유 확인 및 퇴직제한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4)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한 후 퇴직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하동군 ○○과에서는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과에서는 2020. 6. 30. 명예퇴직한 □□□ 등 7명에 대해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퇴직 제한사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을

^{4) 「}지방공무원법」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허용하였다.

다.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명예퇴직 등) 및「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등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퇴직일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신청을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에 따르면 명예퇴직자 중 명예퇴직일 전날까지해당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고, 다만 재직기간 중 중징계처분 또는「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승진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하동군 〇〇과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해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을 할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이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과에서는 2019. 12. 31. 당시○○○인 지방○○○○○ ★★
★가 2010. 7. 26. 음주운전으로 '감봉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으로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한 사실이 있다.

3. 승진예정인원 산정 부적정

가.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과에서는 매년 6월과 12월,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결원이 발생하면 결원 수만큼 승진직렬을 선정 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와「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공무원의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고, 승진임용일 경우 4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배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동군 〇〇과에서는 4급 이하 당해 직급에 결원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하위 직급에서 승진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과에서는 2018. 1. 2. 군수에게 "승진직렬결정 및 대상자" 업무보고를 하면서 당시 ○○○○○○ ○○인 ○○○○○ ▽▽▽이 징계절차 진행 중인 관계로 공로연수대상자5)가 될 수 없어 결원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공로연수대상자로 선정하여 결원으로 산정하였고, 같은 날 인사위원회에서 ○○○○○으로의 승진대상자 1명이 추가 심의·의결 되었다.

덧붙여 설명하면 ▽▽▽의 결원 산정에 따라 2018. 1. 2.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로

⁵⁾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공로연수대상자에서 제외함

4. 근속승진 심의 부적정

가.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과에서는 일반직 7~9급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 임용을 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제2항에는 7급은 11년이상, 8급은 7년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고 있으면 근속승진임용 후보자가될 수 있고,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연 1회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동군 〇〇과에서는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는 연 1회만 실시하여야 한다.

다.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과에서는 2019. 1.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상반기정기인사 기준 및 승진심사를 하면서 당시 지방○○○○○ ●●● 외 4명에 대해 근속승진 임용 심의·의결을 하였고, 그 결과 ●●● 외 4명은 2019. 1. 3.자로 근속

^{6) ○○○}의 의원면직 신청에 따른 비위사실 조회 결과가 감사원에서 통보된 날짜가 2018. 5. 18.임을 감안하면 ○○○이 의원면직 처리된 2018. 5. 17.자 발령도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승진 임용되었다.

또한 하동군 ○○과에서는 2019. 12. 27.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기준 및 승진심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지방○○○○○ ●●●에 대해 근속승진 임용 심의·의결을 하였으며, 해당 공무원들은 2020. 1. 1.자로 6급으로 근속승진 임용되었다.

그 결과 하동군 〇〇과에서는 2019. 1. 2.과 2019. 12. 27. 두 번에 걸쳐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심의를 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 제7항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1. 인사기록 관리 소홀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적정

(하동군 의견) 법령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실무자 업무연찬을 통해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다.

(검토결과) 인사기록 관리는 인사업무 추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업무이며, 본 건과 같이 인사기록을 인사발령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미 입력할경우 승진(승급)임용, 급여지급 등 당해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심지어 다른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등 그 파급효과가 크다 할 것이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퇴직 제한사유 확인 소홀 및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부적정

(하동군 의견) 퇴직 제한사유 확인 소홀 건은 실무담당자가 관련법령은 숙지하고

있었으나 당시 퇴직신청자가 다수임에 신청서가 모두 접수되면 징계사유 조회를 하려하였으나 바쁜 업무로 인해 조회시기를 놓친 것이며,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 승진임용 건은 당시 실무담당자 이 2019. 7. 1.부터 인사업무를 하였고 당해 규정은 그 이전인 2019. 6. 25. 개정된 것으로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의견 제시하였다.

(검토결과)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자 이를 법에 직접 명시하여 방지하고자 2015. 12. 29.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가 신설되었고 법에 명시된 만큼 퇴직 전 비위사실 조회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더욱이「하동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에는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 제한사유 확인 업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하며 이를 위반 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

비록 당시 실무담당자가 정기인사 업무 등으로 바빠, 퇴직 제한사유 조회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업무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 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기에 그 책임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또한「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는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 승진임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9. 6. 25. 개정된 것으로 실무담당자는 명 예퇴직 신청자에 대해 과거 징계처분 전력을 면밀히 살펴야 할 성실한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3. 승진예정인원 산정 및 근속승진 심의 부적정

(하동군 의견) 승진예정인원 산정 부적정 건은 업무연찬과 관련법령 숙지 미흡이 원인이라고 하면서도 당시 ▽▽▽이 징계절차 진행 중으로 공로연수가 불가하고 이미 퇴직을 결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 1명을 선 승진의결하였지만 ▽▽▽이 의원면직한 후 승진임용을 하였고, 근속승진 심의 부적정 건은 2019. 12. 27. 근속승진 심의를 하고 발령은 2020. 1. 1.로 하면 된다는 실무담당자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의견 제시하였다.

(검토결과) 실무담당자 ▦▦▦는 2018. 1. 2. "승진직렬결정 및 대상자" 업무보고 당시 이미 ▽▽▽이 징계절차 진행중이라 공로연수대상자가 되지 못함을 알았고, 승진예정인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나 당시 ○○○○○○ ○○ 자리가 공백이어서 승진의결을 하고 직무대리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8. 1. 5.자 정기인사를 보면 ▽▽▽은 ○○과로 대기발령이 났고, ○○○○○○ ○○ 직위에 당시 ○○○○인 지방○○○○○ ▼▼▼이 부임을 하였으며, 승진의결자로 내정된 지방○○○○○ ※※※는 ○○○○○○ ○○이 아닌 ○○○○○○ 직무대리로 전보되었다.

당시 ○○ 자리에 부임한 자는 행정직이었으며, 기존 ○○○○○인 ○○○○○ ●●●은 ○○○○으로 전보되었고, ○○○○○ 자리에 승진의결자 ※※※를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으로 ○○○○○○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는 하동군 ○○과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①「지방공무원법」등을 위반하여 인사기록관리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적정, 퇴직 제한사유 확인 소홀 및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부적정 그리고 근속승진 심의 부적정 등 인사관리를 소홀히 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지방○○○○○ □□□□(현 ○○○급, ○○면), 감독책임자 지방○○○○○ □□□□(현 ○○과)을 「지방공무원법」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징계)

- ②「지방공무원법」등을 위반하여 인사기록 관리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인사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지방○○○○○ 聞聞聞(현 ○○○급, ○○과), 실무책임자 지방○○○○ \(\omega\) \(\omega\) (현 ○○○ \(\omega\) \(\om
- ③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을 위반하여 보수지급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지방○○○○○ ★★★(현 ○○과), 실무책임자 지방○○○○ ∞∞∞(현 ○○담당), 감독책임 자 지방○○○○○ ♣♣♣(현 ○○과장)를「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 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④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방○○○○○○○에게 소급 지급한 급여액 9,438,310원은 회수하시고, 징계처분에 대해 미입력 하거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입력한 부분은 모두 관련 법령에 맞게 입력 또는 변경 입력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징계의결요구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하동군(○○○과)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과에서는 내부 공무원 비위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또는 수사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체조사 후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수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제69조(징계사유)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령·조례·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에 따르면 그 징계사유가 금품·향응 수수, 공금을 횡령·유용, 배임, 절도, 사기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전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4(징계등의 관할)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시·군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등의 중징계등 사건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하며,「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1항의 [별표 1]의 징계기준 하단 비고1에 따르면「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제1항 제2호

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한편「지방공무원 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에 따르면, 감사원·수사기관·다른 기관에서 정계등(징계 및 정계부가금)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정계위원회에 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인 「지방공무원 정계규칙」제2조에서는 관할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에는 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표 1]의 기준에 따라 엄정히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수사결과	처리기준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2.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 인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출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7.30.시행) 제3조]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그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제1항의 공금횡령에 해당되고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그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제기7)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⁷⁾ 공소제기 : 검사가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로 기소라고도 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과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약식 등이 있음.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징계부가금 및 징계의결 요구양정 결정 부적정

그런데도 하동군 ○○○○라에서는 징계혐의자 ■■■이 2018. 12. 11. ○○용품업체 등으로부터 일명 "카드깡"으로 돌려받은 1,470,000원의 공금횡령 혐의사실에대해, 위 ■■■이 카드깡 금액을 업체에 반환하였고 부서 공통경비 마련을 위한것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정황 등을 참작하여 2019. 2. 8. "○○과 관련조사보고서" 결재·검토 과정에서 징계부가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최종결재권자인 군수가 경징계(감봉)로 요구양정 기준을 정하여 결재한 점을 반영하여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징계부가금부과의결요구 없이 하동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의결 요구만 하였다.

하지만 당시 징계혐의자 ■■■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의 비위(공금횡령)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 중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4(징계등의 관할)에 따라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면 징계관할도 하동군인사위원회가 아닌 경상남도인사위원회가 되었을 것이고 징계처분도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징계의결 요구업무 부적정

하동군 ○○○○마에서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공소제기(구약식 처분) 수사결과 통보서를 접수하고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면 ○○○○급 ▲▲▲ 외 4명에 대해 자체 "훈계" 또는 "주의" 처분하였고, ○○○○과 ○○○급 ▼▼▼에 대해서는 2017. 9. 20.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부터 범죄사실 통보(음주운전)를 접수하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해진 1개월을 초과한 같은 해 11. 23.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등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1. 징계부가금 및 징계의결 요구양정 결정 부적정

(하동군 의견) 금번 감사 지적사항은 관련법령 숙지 미흡으로 발생하였으며 업무연찬을 통해 징계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징계의결 요구시 군수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인 점과 비위공무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였다고 의견제시하였다.

(검토결과) 하동군 ○○○○파에서 2019. ○○. ○○. 군수의 결재를 득한 "○○파관련 조사보고(○○○○○○○호)" 방침문에 따르면 징계부가금에 대한 내용이전혀 없었는데, 이는 당초 군수에게 보고할 때부터 징계부가금에 대한 검토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군수가 당해 징계사유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이를 제외하고 징계만 의결 요구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언급할 수 있지만 "〇〇과 관련 조사보고서"의 내용에는 처음부터 징계부과금 부과대상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보고를 드려 군수가 판단할 여지도 없는 상황에서 군수의 재량권을 언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계부가금은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라할 것이다.

또한 당시 ○○○○과에서 징계의결 요구 시 제출한 확인서8)를 보면 2. 비위유형 ② 공금의 횡령·유용관계 란에 체크가 되어 있어 실무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하였 다면 당해 징계사유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당시 ○○○○담당 ▩▩▩은 당해 사건이 법령상 중징계요구 건이지만

^{8)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제6항에는 징계의결등 요구시 반드시 제출해야할 증명자료 중 하나로 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규정하고 있다.

최종 결재권자(군수)가 경징계(감봉)요구로 결정한 사항이라 결재권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 [별표 1] 징계기준에는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어야 하며, 당해 사건은 하동군인사위원회가 아닌도 인사위원회 관할이 되어 징계관할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징계의결 요구업무 부적정

(하동군 의견) 고충민원 처리와 감사행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비위행위자에 대한 상당한 조사기간을 거쳐 신분상 재정상 징계조치를 함에 있어서비위공무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의견제시하였다.

(검토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제기 통보를 받으면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하동군 ○○○○과에서는 2017. 9.부터 2021. 6.까지 총 17명에 대해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통보받았음에도 이 중 12명에 대해서만 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5명에 대해서는 정계의결요구도 하지 않고 자체 "훈계" 또는 "주의"처분을하고 종결시켰는데, 이는「지방공무원 정계규칙」제3조 제3호 "공소제기 처분 : 별표1. 별표1의2 및 별표2부터 별표4까지의 정계기준 적용"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또한 징계의결요구 하지 않은 5명 중 2명은 "주의"처분, 3명은 "훈계"처분 하였는데 이는 하동군 ○○○○과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자체처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신중을 기했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구약식처분 통보자 17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 제3항의 "1개월 이내" 요구기간을 초과하였는데 특히 〇〇〇〇과 ○○○○○급 ●●●의 경우 창원지검거창지청으로부터 2020. 9. 17. 통보가 왔음에도 약 9개월이 지난 2021. 6. 27.에야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물론 ○○○○담당에서 고충민원 및 기타 감사행정업무 추진 등으로 부득이기한을 초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부 방침문 등을 결재 받아 기한 연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어야 했다.

3. 책임 한계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 부적정 및 징계의결 요구양정 결정 등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 經經經(현 ○○○급)이 당해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직접기안하여 군수까지 결재를 득하였고,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징계의결 요구업무 부적정 건에 대해서도 지적사항 9건 중 8건에 대해 실무책임자로서의 책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시 실무책임자 ○○○○과 지방○○○○ 經經經과 실무담당자 지방○○○○○ □□□(현 ○○○급, ○○○○과) 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당해 사건의 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에 대해 결재·검토과정에서 논의가 있었고 당시 징계혐의자 ■■■이 금액을 업체에 다시 돌려준 점, 부서 공통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지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시부군수(○○○, 퇴직)가 징계부가금은 제외하자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징계의결 요구양정 또한 결재권자인 군수가 직접 경징계(감봉)로 방향을 정하여 방침문에 결재를 한 점 등은 참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실무담당자 지방○○○○ □□□(현 ○○○급 ○○○○과)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 부적정 및 징계의결 요구양정 결정 등 부적정 건과는 연관성이 없고 당시 ○○○○과에서는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 실무담당 자들이 돌아가며 사건별로 업무분장을 하는 상황이었던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등 정계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업무, 정계의결 요구양정 결정 등 업무 및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정계의 결 요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책임자 ㅇㅇㅇ마 지방ㅇㅇㅇㅇ ○○마 집합(현 ㅇㅇㅇ급)과 실무담당자 지방ㅇㅇㅇㅇ □□□(현 ㅇㅇㅇ급, ㅇㅇㅇ마)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정계의결 요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실무담당자 ㅇㅇㅇ마 지방ㅇㅇㅇㅇ □□□(현 ㅇㅇㅇ급, ㅇㅇㅇ마)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주의)
- ② 앞으로 징계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등 의결 요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소 관 기 관 하동군(ㅇㅇㅇ과)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 개요)

하동군 ○○○○파에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미이행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3의2호에 따르면 "개발행위 규모"란 관리 지역 30,000㎡ 미만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하며,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의 경우"란 하나의 필지,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법제처 법령 해석(법제처 17-0642, 2018. 1. 29.)에 의하면 ①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3호의2 나목에서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있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하나 이상의 필지"에서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건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행위규모가 그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고, ②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위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세부적인 검토 기준으로 마련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3-1-1(1)에서는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시기에 관계없이 그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규모를 산정하도록 한 점 등에비추어 보면,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어 허가권자가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각 개발행위의 목적, 연접한 필지에서 이루어지는개발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따른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방법 : 국토계획법 해설(2018, ○○○)

여러 필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 면적을 산정하나, <u>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하나의 개발행위인데 법령상 절차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 면적으로 산정하고,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의 성격, 토지소유(동일인) 여부 등을 통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u>

- 가. 동일인이 지번이 다른 필지(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도 포함)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에는 필지별로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 나.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정형화 하는 방법 등으로 각각의 건축을 하는 경우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개발하거나 여러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여러 동의 건축물이 하나의 시설인 경우 또는 공작물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여러 필지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

- 다. 동일인이 서로 연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시차를 두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시에는 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
- 라.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준공된 필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에 동일인이 개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다만, 기존의 공장 부지를 증설하는 경우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모를 합산하여 산정하여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 마. 여러 필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면적을 산정하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하나의 개발행위인데 법령상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

따라서 하동군 ○○○○라에서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에 30,000㎡ 규모를 초과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 동일인 토지 소유 여부확인 등을 통해 하나의 개발행위(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에서는 [표 1]과 같이 ① 2018. 1. 18. ○○○○○○○ 외 00개 회사가 보전관리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목적으로 신청한 ○○면 ○○리 산○○ 외 ○필지에 대하여 서로 연접한 필지를 합산한 개발 면적은 49,214㎡ 로서 개발행위허가 규모(30,000㎡)를 초과하였는데도 여러 필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같은 해 4. 2.에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② ○○○○○ 외 00개 회사(68,701㎡, 보전관리지역), ③ (유)○○○ 외 00개 회사(118,829㎡, 계획관리지역), ④ ○○○○ ○○○○○○ 외 0개사(33,904㎡, 보전관리지역)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2018. 5. 28.과 같은 해 11. 9. 그리고 같은 해 12. 30.에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 기간(2021. 7. 12.~7. 20.) 중 [표 1]과 같이 동일인 토지 소유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① 사안에서는 실소유자인 ㈜○○○의 경우 다수의 개인 사업자 명의로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부분은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운영 중이며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였고, ②, ③, ④ 사안에서도토지 소유자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자(피허가권자) 사이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이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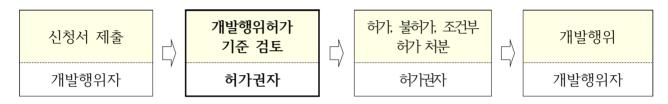
[표 1] 개발행위허가 토지 소유자와 신청자(피허가권자) 연관성

구분	위치	부지 면적 (m²)	토지 소수 허가 시 (허가 일자)	우권 변동 준공 후 (준공일)	신청자 (신청일)	직·간접적인 연관성
계	4개소	270,648	실소유자 , 사용권 확보	실소유자, 일반인	00개 회사	개인 사업자 명의로 개별적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 또는 일반인 분양
1)	○○면 ○○리 산00 외 0필지	49,214	(주)○○○ (대표이사 ○○○) (2018. 4. 2.)	(추) (그 (2019. 7. 15.) (2019. 9. 27.) (2019. 7. 15.)	(주)○○○ ○○○ 외 00개 회사 (2018. 1. 18.)	 ・ 토지 소유자 : ㈜○○○ 및 계열사 ・ 피허가권자 : 다수의 개인 사업자 → 실소유자인 ㈜○○○에서 다수의 개인 사업자 명의로 개별적인 개발 행위 하기를 받아 일부는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일반인 분양
2	○○면 ○○리 산00 외 0필지	68,701	○○○씨 ○○공파 ○○종중 (2018. 5. 28.)	OO 외 00인 (2019. 9. 14.)	으으으 외 00개 호사 (2018. 1. 28. ~ 2018. 1. 30.)	 ・토지 소유자 : 다수의 개인 사업자 ・피허가권자 : 다수의 개인 사업자 → 공급업체(미상)에서 다수의 개인 사업자 명의로 개별적인 개발 행위허 가를 받아 일반인 분양
3	○○면 ○○리 산00-0 외00날이	118,829	○○○○ ○○○ (대표이사 ○○○) (2018. 11. 9.)	OOO (2019. 9. 12.) 6개 회사 (2019. 9. 12.)	(유)○○○ 외 00개 회사 (2018. 4. 2. ~ 2018. 4. 3.)	 ・토지 소유자: ○○○○○○○○○○ ・피허가권자: 다수의 개인 사업자 → 실소유자인 ○○○○○ 등에서 다수의 개인 사업자 명의로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일부는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일반인 분양
4	○○면 ○○리 산000 외 0필지	33,904	으으 외 0인 (2018. 12. 30. ~ 2018. 12. 31.)	(유) (유) (유) (유) (2021. 1. 22.)	○○0○ ○○○ 의 아바 (2018. 2. 27.)	 토지 소유자: (유)○○○○0, ○○○○○○○00(유) · 피허가권자: 다수의 개인 사업자 → 실소유자인 (유)○○○○0, ○○○○○○000(유)에서 다수의 개인 사업자 명의로 개별적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 중

[출처 : 하동군 제출 자료 재구성, 세부 내용 [별첨] 참조]

뿐만 아니라「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1-3에 따르면 허가권자로서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림]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 시에는 개발행위허가 규모(관리 지역 30,000㎡ 미만)에 적합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경우 여러 필지에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점과 명의를 달리하여 각각의 개발행위허가로 신청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개발행위(사업)이므로 전체를 개발행위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림] 개발행위허가 절차



[출처:「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재구성]

이에 대하여 위 부서에서는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연접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산정 등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관리지역 30,000㎡ 미만인 소규모 개발행위허가9)로 잘못 적용하여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4차례)만을 거쳐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하였다.

그 결과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설치되는 등 위법·부당한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표 2]와 같이 ①, ②, ③, ④ 사안의 경우 자연환경 보전(평균표고, 평균경사도, 생태자연도), 산림보호(수종, 벌채수목, 입목축척) 등 개발제한 요소를 고려한 계획적인 규제가 배제되어 과도한산림 및 경관 훼손 방지, 주민 피해 방지 등 공익성은 현저히 해태된 반면에 사업자측에서는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소요 기간10) 등 경제적·시간적 비용과 부담을줄여 주는 혜택을 부여하여 이유 추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⁹⁾ 기존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를 폐지(2011. 3. 9.)하는 대신에 연접개발 제한을 받던 용도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함 10) 최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원안 ○, 조건부 ○), 인.허가 소요 기간: 6개월~1년 5개월

[표 2] 대규모 개발행위 시 개발제한 요소

		부지 @자연환경 보전		®산림보호			개발		
구분	위치	면적 (m²)	평균 표고 (m)	평균 경사도 (도)	생태 자연도 (등급)	수종	벌채 수목 (본)	입목 <i>축</i> 척 (밀도) (㎡/ha)	개발 제한 요소
계	4개소	270,648							
1	○○면 ○○리 산 00 외 0필지	49,214	112.5	10.1	3	밤나무외 4종	137	8.18	(a)
2	○○면 ○○리 산 00 외 0필지	68,701	82.1	12.07	2	소나무외 9종	6,315	1,134.8	a b
3	○○면 ○○리 산00-0 외00팔이	118,829	86.8	16.2	2	소나무외 9종	4,312	342.9	a b
4	○○면 ○○리 산 000 외 0필지	33,904	167.1	19.93	2.3	소나무외 9종	448	50.7	a

개발제한 요소별 세부기준

- 1. 평균표고·경사도 : 산지의 녹지축 보전하도록 지역별 평균 표고, 평균 경사도 25도(면적 : 5,000㎡ 이상 17도) 이상의 개발 제한
- 2. 생태자연도 : 자연 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것으로 1등급(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2등급(개발 이용 시 훼손 최소화), 3등급(개발 이용 대상지)으로 구분
- 3. 입목축척 : 하동군 평균 입목축척(179.35㎡/ha) 대비 150% 미만으로 제한

[출처 : 하동군 제출 자료 재구성]

3.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실 확인 업무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표 3]과 같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3,000㎡ 또는 연간 5,000㎡, 토지 면적은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 개발11)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 요건12)을 갖추어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¹¹⁾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건설 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건축물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함

¹²⁾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가. 자본금이 3억 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으로서 주식회사는 자본금 3억 원이상, 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출자금 3억 원일 것

나. 사무실 및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상근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종류	건축물 연면적	토지 면적	ਖ] ਹ
규모	3,000㎡ 이상 (연간 5,000㎡ 이상)	5,000㎡ 이상 (연간 10,000㎡ 이상)	

그리고 [표 4]와 같이「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국토교통부, 2018. 3.)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의 (변경)허가 등을 하거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및 개발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 받아 등록 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허가 면적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됨에도 인·허가 신청자가 "공급 외목적(직접 사용)"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 받아 "이후에는 인·허가 명의 변경 등 일체의 공급 행위가제한됨"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와 동시에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을 인허가 등을 받은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및 인·허가 신청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공급 외 목적(직접 사용)"으로 신고하여 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 (인·허가 명의 양도 등 사업 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부동산 개발업법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무등록 사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4]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 처리 과정

구분	인ㆍ허가 단계	사후 관리	비고
타인 공급 목적의 부동산 개발	등록 사실 확인 신고서 제출 (개발업 등록증 사본 제출) 개발행위 인·허가	부동산 개발 허용	
본인 직접 사용의 부동산 개발	비등록 대상 확인서 제출 (일체의 공급 제한) · 개발행위 인·허가 · 시·도지사 통보	인·허가 명의 양도 또는 타인 공급 행위 시·도지사 통보 수사기관 고발	

따라서 하동군 ○○○○파에서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등에 따라 법인, 개인 등이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 연면적 3,000㎡(또는 연간 5,000㎡), 토지 면적 5,000㎡(또는 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인·허가 이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 확인서를 제출 받아 인·허가 명의 변경이나 타인에게 일체의 공급 행위(판매 또는 임대)가 제한됨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고, 인·허가와 동시에는 이러한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사업 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공급하는 등으로 부동산개발업법 제36조를 위반한다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파에서는 2018. 4. 2. (유)○○○ 외 00개 회사가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신청한 하동군 ○○면 ○○리 산00-0번지 외 00필지 (118,829㎡) 등 2개소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토지 면적 5,000㎡ 이상으로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임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 받지 않은 채 2018. 11. 9.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고, 2021. 7. 20. 감사일 현재까지도 도지사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2021. 7. 12. ~ 7. 20.)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에 대한 사후 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표 5]과 같이 위 (유)〇〇〇 외00개 회사 등 2개소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준공한 이후 2020. 9. 24.과 같은 해10. 30. 그리고 2020. 10. 5.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무등록 사업자)에서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타인 공급 행위(매매) 신청인 용도 허가 허가일 지목 위치 면적 (신청일) 지역 목적 (준공일) 일자 매수자 (m^2) 3개소 132.497 합계 (유)○○○ 외 계획 ○○면 ○○리 태양광 2018. 11. 9. 2020. 9. 24. ∞ 산00-0 외 00개 회사 과리 임 118.829 2020. 10. 30. 발전시설 (2020. 9. 12.) 외 0개사 00필지 (2018. 4. 2.) 지역 보전 00000 ○○면 ○○리 태양광 2018. 2. 27. 0000 발전소 관리 임 13.668 2020. 10. 5. 산100 발전시설 (2020. 7. 27.) 주식회사 (2018. 2. 27.) 지역

[표 5]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개발행위허가 현황

[출처 : 하동군 제출 자료 재구성]

그 결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방지와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무등록으로 인한 개발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도 부동산개발업법 제36조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 ○○○○마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법령 이해와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계획관리·보전관리지역의 단일 또는 연접규모가 30,000㎡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개발행위(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4개 지역의 연접지에 대해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로 처리하였으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임에도 등록사실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면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미이행,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 담당자 ○○○의 지방○○○○ ○○○, 실무책임자 ○○○의 지방○○○○ ○○○(현 ○○○○과)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징계)
- ②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미이행,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감독 책임자 ○○○○과 지방○○○○○ ○○○ (현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③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한 자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④ 앞으로 연접한 여러 필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 초과에 따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등록 대상임에도 확인 절차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행위 허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 요구

제 목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부적정

소 관 기 관 하동군(ㅇㅇㅇ과)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아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사시설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표 1]과 같이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가 도입(2008. 5. 26.)됨으로써,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및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은 물론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한다)에 따라 [표 2]와 같이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1] 자연장 정의 및 종류

자연장의	비 정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			
		구 분	대 상	장 소	시설물
•	매장과 자연장의 구분		시신 또는 유골	묘지	분묘 (비석, 상석, 기타 석물)
			화장한 유골의 골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	표지, 편의시설
자연장지의	공설 자연장지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			
종류	사설 자연장지	시.도지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아닌 자가 조성.관리하는 자연장지		



[출처: 2021 장사업무 안내(보건복지부)]

[표 2]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고) 현황 (단위:건)

구 분	합 계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종교단체 자연장지
합계	26	2	15	8	1
2017년	7	1	5	1	_
2018년	8	-	7	1	_
2019년	3	1	-	2	_
2020년	5	-	3	1	1
2021년	3	_	_	3	_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사법 제16조, 제31조, 제40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표 3]과 같이 사설자연장은 개인·가족자연장, 종중·문중자연장, 종교단체자연장, 법인자연장으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서 자연장할 수 있는 종교단체의 자연장지를 조성(변경)을 하려는 자는 [그림]과 같이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시장·군수에게 사전에 허가(변경)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명령, 허가취소, 시설의 전부·일부 사용 금지, 시설의 폐쇄, 이행 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21 장사(葬事)업무 안내(보건복지부)』10-1-1에 의하면 장사시설설치·운영 주체로서의 종교단체는 ①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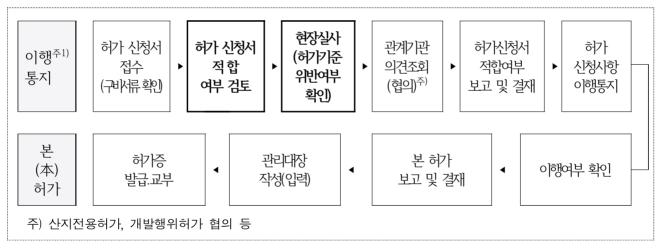
설립된 종교법인 ②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 ③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종교단체는 물적요소인 성당·교회·불당 등의 종교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목사·주지 등과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종교적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3] 사설자연장의 종류

개인·가족자연장	면적이 100㎡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종중·문중자연장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종교단체자연장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법인자연장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출처: 2021 장사업무 안내(보건복지부)]

[그림]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변경) 절차



[출처: 2021 장사업무 안내(보건복지부)]

따라서 하동군 ○○○○과에서는 종교단체에서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요건인 종교단체(종교법인)의 소속여부, 교회 건물 존재유무, 목사 및 신도수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과에서는 2020. 0. 0. ○○○○○에서 신청한 ○○면 ○○리산000번지(1,980㎡, 임)에 위치한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하면서 [표 4]와

같이 종교단체(종교법인)의 소속여부, 교회 건물 존재유무, 목사 및 신도수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종교단체 소속 증명서, 교회정관, 교회 고유번호증, 자금조달계획서, 토지대장 및 등록증명서 등 허가신청서 구비서류만으로 인·허가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검토한 후,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협의를 거쳐 [표 5]와 같이 같은 해 12. 10. 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¹³⁾를하고, 같은 해 12. 10.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하였다.

[표 4] ○○공원 종교단체의 허가신청서 구비서류

구 분	검토항목	허가신청서	비고
종교법인	종교단체 (종교법인)의 소속여부	종교단체 소속 증명서	
허가증	종교단체 정관.규약	교회정관 제1조~33조 구성.운영	
	종교단체 재산	교회(고유번호증), 자금조달계획서	
물적요소	토지소유권 확보	토지대장,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이저ㅇㅆ	목사	대표목사	
인적요소	신도 및 교인수	4인~20인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5] ○○공원 자연장지 조성 허가내역

신청일 (허가일)	유형	조성 형태	위 치	조성자	목	조성면적 (m²)	자연장 능력 (구)
'20. 9. 24. ('20. 12. 10.)	자연장	잔디형	하동군 ○○면 ○○리 산000	OOOOOO (대표 OOO)	임	1,980	71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¹³⁾ 본(本) 허가를 하기 전에 행하는 과정으로 인.허가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의미하는 내인가 및 사 전결정제도의 성격에 해당함

그러고 나서 2020. 12. 00.[날짜 미상]과 2021. 3. 8. ○○○○○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SNS 및 홍보 전단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홍보·분양활동을 하고 있다는 2차례에 걸친 민원제보가 있었고, 위 부서에서는 종교재산 단체로서의 자격요건을 재검증하여 [표 6]과 같이 2021. 5. 25. 종교단체 자연장지 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표 6] ○○공원 자연장지 조성 허가 취소 처분내역

처분일	당사자	행정처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21. 5. 25.	00 00 00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취소	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 및 분양활동 등 영리행위 확인됨 - 자연장 00구 허가받아 분양가 0백만 원~0천만 원 책정되어 수목장으로 홍보 중② 교회 등의 종교재산 부존재 확인됨 - 종교예배 참여자 대부분 장묘 및 수목장업영위하는 자 - 명의도용한 대표자 ○○○는 ○○ ○○ 거주자로 목회자 아님 ③ 목사 등 상당수의 신도 부존재 확인됨	장사법 제31조
		일반인 대	상 자연장지 분양 홍보 전단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이서는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2. 행정소송과, 같은 해 7. 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야기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 ○○○○마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검토 및 조성지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야기시켰다고 하면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 ○○○, 실무책임자 ○○○○과 지방○○○○ ○○○(현 ○○○○과)을 「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② 앞으로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 시에는 종교단체로서의 적격성, 사용 목적 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종교 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업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미이행

소 관 기 관 하동군(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마에서는 ○○공원 내 사유지이면서 경작지인 다랭이 묵밭으로 되어 있는 미조성 공원부지를 생태휴식공간 및 생태적 문화공간·도심 소생물의 서식처로 제공할 목적으로 [표 1]과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14)의 일환으로 시행 하는 『○○공원 다랭이 묵밭 소생물 서식처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제공,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표 1] ○○공원 다랭이 묵밭 소생물 서식처 복원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위치	사 업 량 (m²)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비고
○○공원 다랭이 묵밭 소생물 서식처 복원사업	○○읍 ○○리 일원	4,800	500	2018. 6. 25. ~ 2018. 11. 16.	0000 00공사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6조의2조에 따르면 [그림]과 같이 도시공원은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¹⁴⁾ 환경부에서「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의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자(대행자)가 생태계 복원, 대체자연의 조성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수립된 공원조성계획¹⁵⁾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을 설치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 등이 명기된 실시계획서류를 작성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14일 이상 공개 열람하게 한 다음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



따라서 하동군 ○○○○파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 부지에 공원 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먼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시·군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수립·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파에서는 『○○공원 다랭이 묵밭 소생물 서식처 복원사업』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 부지에 해당하며 2017. 12. 26. 사업시행자인 ○○○○○공사로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표 2]와 같이 2017. 12. 27.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1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무권한 위임됨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의견 없음"으로 회신함으로써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인·허가 절차 없이 착공 (2018. 6. 25.), 준공(2018. 11. 16.)하였으며, 2021. 7. 20.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공원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의적이고 무계획적인 개발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이라는 공익성을 훼손하게 되었다.

[표 2] 공원조성계획 변경 미수립(미결정) 내역

								건	축 구	구 모 (m²)			
구	분	<u>1</u>	부지면적	(m²)) 건 축 면 적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후	증	감	기정	변경 후	증	감	기정	변경	증	감
총	계	167,000	167,000	12,788	12,788	450	1,850	1,400		550	3,350	2,800	
시 설	소 계	22,656	33,835	12,766	1,609	450	1,850	1,400		550	3,350	2,800	
도로	광장	11,166	10,367		799	-	-				-		
조 경	시 설	690	690			-	_			-	_		
휴 양	: 시 설	3,820	3,010		810	-	_			-	_		
유 희	시 설	260	260			-	-			-	_		
운 동	·시설	850	850			-	_			-	_		
교 양	: 시 설	3,750	16,538	12,788		250	1,650	1,400		250	3,050	2,800	
편 익	시 설	2,120	2,120			200	200			300	300		
녹	지	144,344	33,165		11,179	-	_			-	-		
	'		위 치 도	1					ę	현황 평면도			
			\mathbf{X}										
							,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 ○○○○아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본 사업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 공공기관인 ○○○○○○공사에서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준공 후 하동군에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부지내 시설설치 시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 공원시설을 설치하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과 지방○○○○ ○○○(현 ○○면), 실무책임자 ○○○○아과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이행하지 않고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공원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6조의2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결정 등 적법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주의 요구

제 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미이행

소 관 기 관 하동군(ㅇㅇㅇㅇ과, ㅇㅇ과, ㅇㅇㅇㅇ과,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마에서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 한다)」제10조2에 따라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동하거나 접근하는데 있어 불편을 없애고 보행환경도 개선할 뿐만아니라, 유지·관리단계에서 각종 이동편의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있도록 인증신청 절차를 이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 등 편의법 제10조2에 따르면 2015. 7. 29.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별첨]에 해당하는 시설의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이라 함)"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인증 신청은 [표 1], [표 2]와 같이 개별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설계단계에서는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준공단계에서 본인증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설주에게는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도록하는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모범적역할을 기대하고자 인증의무시설의 범위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보다 폭 넓게정하고 있다.

[표 1] BF 인증 절차

구 분	실시설계 신청 시	준공단계	비고
본 인증부터 신청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인증수여	
예비인증부터 신청	예비인증신청	본 인증 신청 인증심사 인증수여	

[표 2] BF 인증 절차

구 분	기관명	기관의 역할	비고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BF 인증제도 운영 총괄	
인증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대상의 심사.심의 •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 • 인증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 주무기관에 반기별 보고	

따라서 하동군 ○○○○파에서는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함에 있어서 BF인증 대상시설 여부를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의무대상인 경우 설계단계에서는 예비인증, 준공단계에서는 본인증을 받는 등 BF인증 의무이행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과 등에서는 [표 3]과 같이 2017. 9. 1.부터 감사일 현재 (2021. 7. 20.)까지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축시설 11건 중 실제 본인증을 획득한 시설은 7건(64%)이었고, 본인증을 미획득한 시설은 4건(36%)에 달하였다.

[표 3] BF 인증 의무시설 본인증 획득 현황

하出	계	본인증 호	· 딕득(예정)	본인증	본인증 미획득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비고	
11건	100%	7건	64%	4건	36%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본인증을 미획득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과 등 4개 부서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1회에 걸쳐 보건복지부 ○○○○○○과, 경상남도 ○○○○과, 하동군 ○○○과 등 담당기관 및 담당부서로부터 BF 인증제도 운영 안내 및 준수 협조공문을 통보받은 바 있고, 건축허가 당시 ○○○○과에서 BF인증 대상시설이라는 관계부서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BF인증에 필요한 소요기간(3개월 이상)과 설계비, 인증수수료, 시설 개선비 등 예산부족을 이유로 BF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본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공공건축물이 사후 본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표 4]와 같이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투입 및 재시공에 따른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일부는 전면적인 건축물 개축 등으로 본인증 미획득 시설로 남게 되어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으로 행정기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들은계속적인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BF 인증 의무시설 미획득 세부내역

7] 어머	이 권 사업비		7] OJ 7] 7].	인증의두	무시설	미인증	시설개선 예산액	담당
사업명	취 시	(백만원)	사업기간	종 류	건축면적(m)	사유	에선액 (백만원)	부서
합 계	4개소	2,509			2,512.2		35	
○○문화센터 신축공사	○○면 ○○리 000	145	2017.12.18. ~ 2019.05.17	제1종근린 생활시설 (목욕장)	1083.2	소요기간 예산부족	15	OO OO라

사업명	0) 7)	위 치 사업비 사업기간 인증의무시		^그 시설	미인증	시설개선 예산액	담당	
시합당	H 1	(백만원)	사업기간	종 류	건축면적(m)	사유	에선액 (백만원)	부서
○○○○○ 어린이집 신 축공 사	○○면 ○○리 0000-00	850	2018.04.06. ~ 2018.11.19.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476.82	소요기간 예산부족	10	○○과
○○0000○ 신 축공 사	○○읍 ○○리 000-0	1,333	2015.12.28. ~ 2017.06.20.	문화및집회 시설 (문화관)	731.68	소요기간 예산부족	개선불가 (면적협소)	OO OO라
○○수산물 판매시설 신축공사	○○면 ○○리 000-0	181	2015.09.22. ~ 2015.12.22	제1종근린 생활시설 (소매점)	220.5	소요기간 예산부족	10	OO OO라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별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의무 시설

	대상 시설	비고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1 7117 7711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	
1. 제1종 근린생	^활 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O 케이즈 그리 제출L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	
2. 제2종 근린생	^늴 、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시설	안마시술소	
	공연장 및 관람장	
3. 문화 및 집	회 집회장	
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학교	
7.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대상 시설	비고
	아동 관련 시설	
8.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1. 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 복지공단의 사무소	
10 Aul 12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12.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주차장	
시설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 송통 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0. 0000011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 ○○○○과 등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BF 인증에 따른 소요예산, 소요기간 등으로 BF인증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앞으로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함에 있어서 BF인증 절차 미이행 등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느끼지 않도록 공공건축물 BF인증 절차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바랍니다. (주의)

주의 주의 요구

제 목 불법산지전용 복구의무면제 및 산림단속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하동군(〇〇〇의)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과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행위자에 대해 산지복 구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불법산지전용 복구의무면제 등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5조(산지전용신고)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53조 내지 제55조(벌칙)에 따라 시장·군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할 수 있고 사법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3항에 의거 복구대상산지(불법전용지 등)에 대하여 산지전용신고·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 및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면적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복구의무면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행위자가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면제신청서와 더불어 산지전용 신고서 및 허가 신청서 등 복구의무가 면 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복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야 하며, 설령 산지전용신고 등을 조건으로 복구의무면제를 통보할 때에는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파에서는 [표 1]과 같이 창고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면 ○○리 산○○외 2필지의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사법조치된 ○○○ 등 10명의 행위자가 불법건축물로 인한 복구대상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신고서 및 허가 신청서 등 복구의무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없이 복구의무면제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음에도

산지전용 신고 및 허가를 득할 조건으로 복구의무면제를 통보하였고, 이후 복 구의무면제 조건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면 ○○리 ○○ 등 ○○○ 외 2명의 산지 훼손지에 대한 복구의무 면제가 부적정하게 처리되었다.

[표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의무면제 처리 부적정 현황

	복구	P의무면제	처리 내역		산지전용	미복구면적
행위자	위치	면적 (m²)	산지훼손내역	복구의무면제 통보일	신고·허가일 (면적 m²)	(m²)
10명		18,990				2,332
000	○○면 ○○리 산○○ 외 2필지	7,750	창고, 야적장	2019. 3. 15.	'19. 5. 9. (9,361)	
000	○○면 ○○리 산○○	1,110	야외수영장	2018. 7. 16.	'18. 8. 3. (1,110)	
000	○○면 ○○리 ○○ 외 1필지	122	사무소, 소매점	2018. 6. 18.	′18. 9. 28. (122)	-
000	○○면 ○○리 산○○	265	농가창고	2019. 11. 29.	'19. 12. 30. (265)	-
000	○○면 ○○리 산○○	1,001	작업로	2019. 11. 29.	'19. 12. 17. (1,001)	-
000	○○면 ○○리 ○○, ○○	916	농가주택, 개간	2021. 5. 7.	'21. 5. 7. (484)	432
000	○○면 ○○리 산○○ 외 1필지	785	농가창고	2020. 7. 13.	'21. 1. 26. (772)	13
000	OO면 OO리 산OO	4,890	종교시설	2020. 2. 4.	'20. 2. 28. (4,890)	-
000	○○면 ○○리 산○○	264	농가주택	2020. 11. 16.	'20. 11. 26. (264)	-
000	○○면 ○○리 산○○	1,887	농가주택, 개간	2021. 2. 1.	조치내역 없음	1,887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산림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제3조(산림보호 단속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장·군수는 인위적인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산림보호 단속계획을 매년 수립 추진하여야 하고, 산림의 피해 예방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하고 산림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보호담당자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8조(불법사항에 대한 조치)에 따라 산림보호담당자가 불법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산림피해상황을 산림사고대장에 기록하고 도벌·무허가벌 채 50㎡이상, 불법산지전용 10,000㎡이상, 불법토석채취 100㎡이상 등에 해당하 는 산림피해는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동군 OOOO파에서는 매년 산림보호담당구역 지정을 포함한 산림보호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불법사항에 따른 산림피해상황은 산림사고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불법산지전용 10,000㎡ 이상의 산림피해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OOOO과에서는 산림보호 단속계획을 매년 수립하지 아니하고, 산림사고대장을 비치하지 않아 산림피해상황을 기록한 바 없으며, OO면 OO리 산OO번지에 OOO이 11,158㎡(검찰송치 '19. 7. 10.)의 산림을 훼손한 사항에 대해서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 OOOO과에서는 복구의무면제 통보 후 불법산지전용지를 방치하고, 산림보호를 위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불법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단속과 관련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령 숙지가 미흡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답변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의무면제, 복구명령 등의 업무를 철저하게 추진하고, 산림사고대장 기록을 비롯하여 산림보호단속과 관련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① 「산지관리법」제39조 제3항,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등을 위반하여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의무면제 및 산림보호 단속 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주사 ○○○, 실무담당자 ○○○○

과 지방○○주사 ○○○, 실무담당자 ○○○○과 지방○○주사보 ○○○, 실무담당자 ○○○○과 지방○○주사 ○○○(현 ○○면), 실무담당자 ○○○○과 지방○○서기 ○○○, 실무책임자 ○○○○과 지방○○주사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관련 업무 및 산림보호를 위한 단속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산지전용허가 등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하동군(○○○○과)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과에서는 「산지관리법」제14조 내지 제15조의 2에 따라 산지전용하가 및 산지일시사용 신고 등의 처분을 하고,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된 산지에 대하여 복구설계서(복구의무면제신청서) 승인 및 복구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기간 등이만료된 경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및 제48조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복구의무자)는 산지전용 기간 만료 전 또는 복구공사 전에 산지복구기간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복구설계서에따라 해당 공사기간 내에 복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복구의무자가 복구설계서(또는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표]와 같

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하고,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기간 등이 만료된 산지에 대해서는 복구설계서(복구의무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복구설계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псэп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40조제1항 전단(법 제44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법 제57조제1항					
1) 1천㎡ 미만인 경우 2) 1천㎡ 이상 1만㎡ 미만인 경우 3) 1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25 50 150	50 100 300	100 200 600		
4) 10만m³ 이상인 경우		250	500	1,000		

[출처: 「산지관리법 시행령」제5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10]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OOOO과에서는 감사범위 기간중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산지전용허가 76건을 처리하면서 [별표]와 같이 산지전용을 완료하고 산지전용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 복구설계서(또는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산지일시사용신고 49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산지전용 허가 등에 따른 복구준공 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별표]

산지일시사용 신고 복구설계서 등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 총76건 중 27건은 공사 미착공으로 신고 허가 소멸

연번	신청인	산지 소재지	전용면적 (m²)	허가목적	허가기간
계	49명		73,458		
1	000	000 000	600	작업로 개설	2018.01.26.~2018.12.30.
2	000	000 000	600	작업로 개설	2018.01.26.~2018.12.30.
3	000	000 000	1,200	작업로 개설	2018.02.14.~2019.12.30.
4	000	000 000	1,590	작업로 개설	2018.03.06.~2018.04.30.
5	000	000 000	360	작업로 개설	2018.03.05.~2019.12.30.
6	000	000 000	240	작업로 개설	2018.03.07.~2018.12.30.
7	000	000 000	300	작업로 개설	2018.03.07.~2018.12.30.
8	000	000 000	600	작업로 개설	2018.03.21.~2018.05.31.
9	000	000 000	188	작업로 개설	2018.04.24.~2019.06.30.
10	000	000 000	278	작업로 개설	2018.04.17.~2018.07.30.
11	000	000 000	102	작업로 개설	2018.04.17.~2018.12.30.
12	000	000 000	210	작업로 개설	2018.05.24.~2018.12.30.
13	000	000 000	1,011	작업로 개설	2018.05.29.~2018.12.30.
14	000	000 000	2,430	작업로 개설	2018.06.11.~2018.10.30.
15	000	000 000	1,826	작업로 개설	2018.06.29.~2019.05.30.
16	000	000 000	1,500	작업로 개설	2018.08.22.~2019.12.30.
17	000	000 000	210	작업로 개설	2018.08.22.~2018.12.30.
18	000	000 000	180	작업로 개설	2018.09.10.~2018.12.31.
19	000	000 000	200	농막	2018.10.08.~2020.08.30.
20	000	000 000	17	간이농림어업용시설	2018.03.21.~2018.12.30.
21	000	000 000	630	작업로 개설	2019.01.03.~2019.05.30.
22	000	000 000	540	작업로 개설	2019.01.07.~2019.07.30.
23	000	000 000	1,814	작업로 개설 및 보수	2019.02.19.~2019.07.30.
24	000	000 000	900	작업로 개설	2019.02.19~2019.12.30.
25	000	000 000	300	작업로 개설	2019.03.12.~2019.12.30.
26	000	000 000	180	작업로 개설	2019.03.12.~2019.12.30.
27	000	000 000	750	작업로 개설	2019.03.12.~2019.12.30.

연번	신청인	산지 소재지	전용면적 (m²)	허가목적	허가기간
28	000	000 000	12,076	임산물 소득원 재배	2019.03.20.~2021.02.28.
29	000	000 000	1,350	작업로 개설	2019.03.25.~2019.12.30.
30	000	000 000	900	작업로 개설	2019.03.25.~2019.12.30.
31	000	000 000	900	작업로 개설	2019.04.01.~2019.12.30.
32	000	000 000	1,800	작업로 개설	2019.04.01.~2019.12.30.
33	000	000 000	20,000	임신물 소 득 원 재배	2019.04.01.~2019.12.30.
34	000	000 000	570	임신물 소 득 원 재배	2019.04.17.~2020.03.30.
35	000	000 000	1,500	작업로 개설	2019.04.17.~2019.12.30.
36	000	000 000	800	작업로 개설	2019.05.01.~2019.12.30.
37	000	000 000	1,500	작업로 개설	2019.05.08.~2019.12.30.
38	000	000 000	1,200	작업로 개설	2019.06.03.~2019.12.30.
39	000	000 000	3,000	작업로 개설	2019.06.05.~2019.12.30.
40	000	000 000	1,800	작업로 개설	2019.06.13.~2019.12.30.
41	000	000 000	1,380	작업로 개설	2019.10.02.~2019.12.30.
42	000	000 000	981	작업로 개설	2019.10.07.~2019.12.30.
43	000	000 000	840	작업로개설	2019.11.15.~2020.02.28.
44	000	000 000	450	작업로개설	2020.01.22.~2020.12.30.
45	000	000 000	810	작업로개설	2020.04.14.~2020.12.30.
46	000	000 000	1,500	작업로개설	2020.07.01.~2020.12.30.
47	000	000 000	300	작업로개설	2020.07.08.~2020.12.30.
48	000	000 000	145	재해방지시설	2020.10.05.~2020.12.30.
49	000	000 000	900	작업로 개설	2020.10.06.~2020.12.30.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사후관리에 소홀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착공이 완료된 4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 산지전용일시사용신고에 대한 복구준공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OOOO과 지방OO주사 OOO(현 OOOO과)과 실무담당자 OOOO 과 지방OO주사보 OOO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산지전용이 완료되었음에도 복구설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OOO 등 49명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시행령」제5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등 사업장 행정조치 및 지도점검 부적정

소 관 기 관 하동군(환경보호과)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1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파에서는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등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등 사업장 행정조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대기환경보전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별표 36)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은 1차 경고, 2차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9조에 의해 점검기관은 대기, 폐수, 페기물, 소음·진동,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유해화학물질, 악취 등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및 건설공사 현장의 적발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동군 ○○○○라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여부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 중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장에 대한 변경신고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17. 10. 1.부터 2021. 7. 21. 감사기간 현재까지 기간 중 개발행위허가(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124건 중 신고 87건, 미신고 37건으로 비산먼지 발생 신고가 누락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표 1】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 사업장 현황

(단위 · 건

αг	개발행위허가	비산먼지 발	생사업 신고	(인취 : 건)
연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신고	미신고	비고
총계	124	87	37	
2017.10 ~ 12	16	11	5	
2018	85	64	21	
2019	20	12	8	
2020	3	0	3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2】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 13개소에서 공사기간이 짧게는 33일에서 길게는 566일 연장되었음에도 비산먼지 발생 변

경 미신고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표 2】비산먼지 발생사업장(건축물 축조) 변경 미신고 사업장 현황

연번	대표자	소 재 지	건축물 연면적(m²)	신고일자	공사기간	준공일자	비고
1	000	○○면 ○○리	0000	00.00.00	00.00.00.~	00.00.00	
2	000	○○면 ○○리	0000	00.00.00	00.00.00.~	00.00.00	
3	000	○○면 ○○리	0000	00.00.00	00.00.00.~	00.00.00.	
4	000	○○면 ○○리	0000	00.00.00	00.00.00.~	00.00.00	
5	000	○○면 ○○리	0000	00.00.00.	00.00.00.~	00.00.00	
6	000	00면 00리	0000	00.00.00	00.00.00.~	00.00.00	
7	000	○○읍 ○○리	0000	00.00.00.	00.00.00.~	00.00.00	
8	000	○○면 ○○리	0000	00.00.00.	00.00.00.~	00.00.00.	
9	000	○○읍 ○○리	0000	00.00.00	00.00.00.~	00.00.00	
10	000	○○면 ○○리	0000	00.00.00	00.00.00.~	00.00.00.	
11	000	○○면 ○○리	0000	00.00.00	00.00.00.~	00.00.00	
12	000	○○면 ○○리	0000	00.00.00	00.00.00.~	00.00.00	
13	000	○○읍 ○○리	0000	00.00.00	00.00.00.~	00.00.00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9조 제1항(별표2)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사업(공사)개시 후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사항과 일치 여부,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 완공 시까지 공정률을 고려하 여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3~5월)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동군 ○○○○과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사업개시 후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사항 일치 및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마에서는 【표 3】과 같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사업(공사) 개시 후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신고사항 일치 여부, 시설가동 정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441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27개소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414개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조사율이 6.1%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정기점검 대상 491개소 중 40개소만 점검하고 451개소를 미점검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최근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정기점검률이 8.1%에 불과하였다.

【표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지조사 및 지도점검 현황

(단위 : 건)

		현지조사				정기점검		(1.	
연도	신고 사업장	점검 사업장	미점검 사업장	조사율(%)	대상 사업장	점검 사업장	미점검 사업장	점검률(%)	비고
총계	441	27	414	6.1	491	40	451	8.1	
2018	145	4	141	2.8	132	7	125	5.3	
2019	112	5	107	4.5	114	7	107	6.1	
2020	123	14	109	11.4	126	16	110	12.7	
2021 상반기	61	4	57	6.6	119	10	109	8.4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 ○○○○자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변경 미신고에 대한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민원 발생이 많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위주로 점검하였다고 답변하며 앞으로 수시·정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을 위반하여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등 사업장 현지조사 및 지도점검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OOO의 지방OO주사보 OOO, 지방OO주사보 OOO(현 OOO)과 실무책임자 OOO의 지방OO주사 OOO(현 OOO)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징계·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합격자 결정 소홀

소 관 기 관 하동군(○○과)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 개요)

하동군 〇〇과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하동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에 따라 2020. 3. 16. "2020년 〇〇〇〇〇〇〇 전담인력 공개 채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하동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에 따르면 사용부서가 근로자를 채용할경우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동군 ○○과에서 2020. 3. 16.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2020년 ○○○○○○○○○ 전담인력(○○) 공개 채용 계획**16**)"(행정과-****)에 따르면 채용방법으로 1차 서류심사 40%, 2차 면접심사 60%를 반영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2020. 3. 30. "2020년 ○○○○○○○○ 전담인력 채용 공고문"(하동군 공고 제2020-***호)에서도 채용방법으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명시하였다.

^{16) (}기안) 주무관 ○○○-(검토) ○○○○○담당 ○○○-(전결) ○○과장 ○○○

따라서 하동군 ○○과에서 ○○○○○○○○○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1차 서류전형 점수 40%와 2차 면접전형 점수 60%를 합산 하여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과에서는 2020. 4. 7. 2020년 ○○○○○○○○○ 전담 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한 2명에 대해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응시자격(결격사유 등)에 미달하지 않은 ○○○과 ⑩⑪⑪를 1차 서류 심사의 합격자로 결정하고,

2020. 4. 9. "2020년 ○○○○○○○○○○ 전담인력(○○) 공개 채용 계획"의 서류심사 반영 비율(40%)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이 각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응시자별 서류점수를 산정하는 서류전형 검토 조서18)를 작성하면서 1차 서류심사 점수에 더하여 2차 면접심사 점수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 예정자를 결정 하겠다고 하였다.

[그림 1]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채점표

[출처 : 하동군 제출 자료 재구성]

^{17) (}기안) 주무관 ○○○-(검토) ○○○○○담당 ○○○-(전결) ○○과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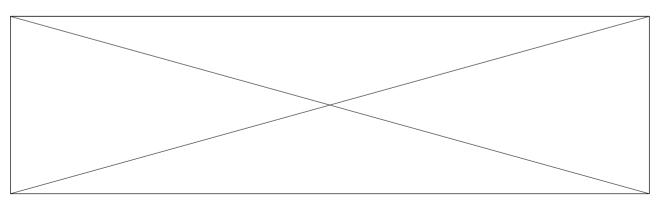
^{18) 2020}년 ○○○○○○○○○ 전담인력 공개채용 서류전형 검토 결과 보고(행정과-*****) (기안) 주무관 ○○○-(검토) ○○○○○담당 ○○○-(전결) ○○과장 ○○○

그 후 2020. 4. 9. ○○○과 ⑩⑪⑪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2020년 ○○○○○○○○○○○○○○○○ 전담인력(○○) 공개 채용 계획"의 면접심사 반영 비율(60%)에 근거하여 평정소요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은 44.67점, ⑩⑪⑪는 47.67점으로 면접 점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이전 채용 시 사용했던 공문을 그대로 재기안하여 사용하면서 채용계획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유로서류전형 점수(40%)를 누락시키고, 면접전형 점수(60%)만으로 ⑩⑪⑪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여 2020. 4. 12. 공개 채용 결과를 보고19)하였으며, 같은 해 4. 13.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림 2] 2020년 전담인력 채용 최종 점수 집계표

[출처 : 하동군 제출 자료 재구성]



[그림 3] 2019년 전담인력 채용 최종 점수 집계표

[출처 : 하동군 제출 자료 재구성]

^{19) 2020}년 ○○○○○○○○ 전담인력 공개채용 결과 보고(행정과-*****) (기안) 주무관 ○○○-(검토) ○○○○ 담당 ○○○-(전결) ○○과장 ○○○

이와 관련하여 감사 기간 중 합격자 결정 내역을 재검토한 결과 [표 1]과 같이 정당하게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합격 순위를 결정하면 탈락자인 ○○○은 서류점수 22점과 면접접수 44.67점을 합산하면 총점 66.67점으로 합격자가 되는 반면기존 합격자인 ⑩⑪⑪는 서류점수 15점과 면접점수 47.67점을 합산하면 총점 62.67점으로 탈락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하동군 〇〇과에서는 당초 수립한 채용계획과 달리 서류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면접점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를 소홀히 처리 하여 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기간제근로자 합격자 결정 검토 내역

	대선	상자	서류	면접점수			최종 점수	기존	정당		
연번	성명	생년 월일	점수 (A)	위원1	위원2	위원3	합계	평균 점수(B)	(A)+(B)	순위	순위
1	000		22	45	47	42	134	44.67	66.67	2	1
2	000		15	47	51	45	144	47.67	62.67	1	2

[출처 : 하동군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에서는 당초 면접점수로만 합격자를 결정하려고 하였으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계획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면서 이 건 발생의 근본 원인이 관련 법령 및 계획서에 대한 검토 미흡에 있다고 답변하였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 ○○○○○○○○○ 전담인력 채용 시 서류점수를 누락시키고 면접점수로만합격자를 결정함에 따라 정당한 합격자의 채용 기회를 상실하게 한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무담당자 ○○과 지방○○○○○○주사보 ○○○(현 ○○○)과 실무책임자 ○○과 지방○○주사 ○○○(현 ○○○)을「지방공무원법」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징계)
- ② ○○○○○○○○○○ 전담인력 채용 건과 관련하여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과보고에 대해 최종 결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감독책임자 ○○과 지방○○사무관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③ 합격자 결정을 잘못하여 채용 기회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구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④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부적정

소 관 기 관 하동군(〇〇과 등 24개 부서)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하동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표 1]과 같이 각 사용부서에서 소관 업무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기준: 2021. 7. 12. 현재)

연	도	2018	2019	2020	2021
채용인	<u>l</u> 원(명)	500	501	871	402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부서 사전협의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하동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에 따르면 사용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 및 예산부서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의 사전절차와 관련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각 기관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표준안」을 개정하여 전국에 시달하고 있으며, 이 표준안 제9조, 제10조 및 11조에서는 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사전협의가 아니라 업무의 필요성 등 채용의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다.

한편 [표 2]와 같이 경남도 관내 ○○시 등 13개 시·군에서는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동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인사 및 예산부서의 사전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채용 시 업무의 상시·지속성, 필요성 등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2] 시·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현황

연번	시군	관련 규정	심사부서
1	OO시	「○○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의2(채용 사전심사제)	심사·승인 부서 - 6개월 이상: 인사조직과 - 6개월 미만: 실국 주무부서
2	00시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관리부서(행정과) 심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가능)
3	OO시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 사전심사)	관리부서(총무과) 심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가능)
4	00시	「○○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계획수립 및 사전심사)	관리부서(행정과) 심사·승인
5	00시	「○○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사전심사제 운영 절차)	관리부서(행정과) 심사·승인 (사전심의회 운영)
6	OO시	「○○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계획수립 및 사전심사)	관리부서(행정과) 심사·승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심의회 운영)
7	○○군	「○○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6조(사전심사제 운영)	인사부서 심사·승인
8	○○군	「○○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채용 사전심사제)	인사부서 심사·승인
9	○○군	「○○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심사)	관리부서(행정과) 심사·승인 (채용심의회 구성 가능)
10	○○군	「○○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의2(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인사부서(행정과) 심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가능)
11	○○군	「○○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사전심사)	사전심사부서(행정교육과) 심사·승인
12	00군	「○○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정수책정)	인사부서(행정과) 심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가능)
13	00군	「○○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관리부서(행정과) 심사·승인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자 등 24개 부서에서는 [표 3]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 운영·관리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인사 및 예산부서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20) 1,229건 2,69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사전협의 미이행

연번	연도	부서 (개)	채용목적	채용건수 (건)	채용인원 (명)
합계		24		1,229	2,690
1	2017	○○○○과 등 18개	하동군○○○○센터 교육○○○○ 등	166	355
2	2018	○○○○과 등 22개	○○ ○○○작은○○○ 관리 등	258	526
3	2019	○○○○과 등 22개	2019년 하동군 ○○○○○○○○ 전담인력 등	268	516
4	2020	○○○○과 등 22개	2020년 ○○○상담○○센터 ○○○ 전담인력 등	351	874
5	2021	○○○○과 등 21개	하동군○○○수련관 배치 ○○○지도사 채용 공고 등	186	419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하동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에 따르면 사용부서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신문 및 하동군 홈페이지 등에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기간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며, 다만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하동군 ㅇㅇㅇㅇ과 등 4개 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²⁰⁾ 감사대상기간(2017.9.~ 감사일 현재까지) 동안 하동군 ○○ 부서에서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

경우 신속한 충원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기간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여야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감사대상 기간(2017.9. ~ 감사일 현재까지) 동안 하동군 ○○○○과 등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공고 여부를 검토한 결과 매년 반복적인 업무등으로서 인력의 수요시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질병, 재해 등 신속한 충원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표 4]와 같이 ○○○○과 등 4개21) 사용부서에서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16건 1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관련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4]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미실시 현황

연번	부서	연도	채용목적	채용기간	채용인원
합계	47				16명
1	0000과	2019	○○○, ○○○ 기념관 운영보조	2019.7.15. ~ 2019.11.30.	1
2	0000과	2019	○○면 꽃길조성, 가로변 정비	2019.7.15. ~ 2019.11.30.	1
3	0000과	2020	○○○ 관리	2020.1.13. ~ 2020.06.30.	1
4	0000과	2020	○○주변 화단 물주기 ○○주변잡초제거	2020.3.30. ~ 2020.06.30.	1
5	0000과	2020	○○○○ 화장실관리	2020.1.13. ~ 2020.6.30.	1
6	0000과	2020	○○○ 관리	2020.7.20. ~ 2020.11.29.	1
7	0000과	2020	○○○ ○○○ 내외 청소 및 관리 (예초기작업)	2020.7.20. ~ 2020.11.29.	1
8	0000과	2021	○○○○센터 민원인안내 및 ○○운영 보조 및 환경정비	2021.2.22. ~ 2021.6.25.	1
9	0000과	2021	○○면 ○○○○○ 운영 지원	2021.4.07. ~ 2021.6.26.	1
10	0000과	2020	○○○○○○○사업 추진 사무국장	2020.1.1. ~ 2020.12.31.	1

²¹⁾ 하동군 ○○○○과 등 20개 부서는 공고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

연번	부서	연도	채용목적	채용기간	채용인원
11	0000과	2020	○○○○○○○아업 추진 사무원	2020.1.1. ~ 2020.12.31.	1
12	0000과	2021	○○○○○○○사업 추진	2021.1.4. ~ 2021.12.31.	1
13	0000과	2021	○○○○○○○사업 추진	2021.1.4. ~ 2021.12.31.	1
14	0000과	2021	○○○○○○○사업 추진	2021.1.4. ~ 2021.12.31.	1
15	0000과	2020	하동읍 ○○○○○○아입 사무장	2020.1.1. ~ 2020.12.31.	1
16	0000과	2018	○○, ○○○관리단	2018.5.1. ~2018.12.22.	1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인사 및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관련 규정에 대한 미숙지, 업무연찬 부족 및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실수라고 답변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 인사 및 예산부서 사전협의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전반적인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공문을 통해 사용부서에 안내를 하였고,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하여 해당 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진행 등의 후속조치를 더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채용공고 미실시와 관련해서도 업무담당자의 법령 숙지 미흡으로 이러한 사실을 초래하였다고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업무연찬과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 긴급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없음에도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실무담당자 ㅇㅇㅇ아 지방ㅇㅇ서기 ㅇㅇㅇ(현 ㅇㅇ시 전출), 지방ㅇㅇ서기보 ㅇㅇㅇ(현 ㅇㅇ이 전출), 지방ㅇㅇ주사보 ㅇㅇㅇ(현 ㅇㅇㅇ 전출), 지방ㅇㅇ주사보 ㅇㅇㅇ(현 ㅇㅇㅇ자), ㅇㅇㅇ아 지방ㅇㅇ서기 ㅇㅇㅇ(현 ㅇㅇㅇ아 지방ㅇㅇ서기 ㅇㅇㅇ(현 ㅇㅇㅇㅇ 전출)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인사 및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채용 시 업무의 상시·지속성, 필요성 등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심사 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고 절차를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하동군(ㅇㅇㅇ과)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하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같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83조 및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등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장 제3호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이 아닌 경우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자본금 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는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을 위한 현금의 평가 방법, 예금의 평가 방법 등 재무제표 자산계정의 각 항목별 평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업 관리규정」 제6장 제2호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행정 정보시스템(CIS)22)통해 통보 받은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분결과(무혐의 처리 등을 포함)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동군 ○○○○파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등에 따라 실질자본금의 법정 기준의 적격여부를 평가한 다음 행정처분 대상과 무혐의 업체를 결정 한 후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처분결과(무혐의 처리 포함)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과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2017~2019년 실태조사 요청**23)**한 자본금 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

²²⁾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건설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건설업 등록·신고수리 및 건설업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정보를 관리함

^{23) 2017}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및 등록증 대여 등 의심업체 조사 요청(〇〇〇〇과-****)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〇〇〇〇과-****) 2019년 건설업 등록지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〇〇〇〇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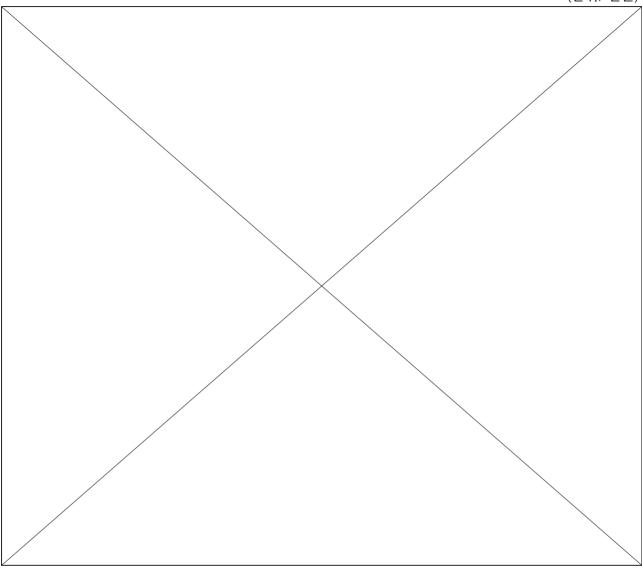
받은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자산 계정의 각 항목별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부실자산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부실자산**24)** 등으로 분류된 항목을 자본총계에서 제외 처리한 후 실질자본을 산출하여 자본금 기준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실질자본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대상 기간 동안(2017.9.~감사일 현재) 실태조사 업무처리 내역을 검토한 결과 [별표]와 같이 하동군 ○○○○과에서는 2017년 ㈜○○○○의 경우실질자본이 법정자본금에 미달함에도 부실자산을 제외하지 않은 자본총계를 실질자본으로 판단하여 무혐의 처리하는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질자본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실질자본이 법정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여 행정처분 대상인 00개 업체에 대해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무혐의로 입력하는 등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4) 「}건설업 관리규정」[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서는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부도어음, 장 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무형자산을 부실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자산 계정의 각 항목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을 부실자산으로 본다.

[별 표] 자본금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무혐의 처리 내역

(단위: 천원)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에서는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부족했고,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관계 법령에 대한 숙지 미흡, 담당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 및 교육 시스템 부존재 등으로 업무의 전문성 부족함에 따라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자본금으로 잘못 판단하고 무혐의 처리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관련 법령에 대한 숙지와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을 위반하여 전문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자본금 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한 실무담당자 〇〇〇아 지방〇〇주사보 〇〇〇(현〇〇면), 지방〇〇서기보 〇〇〇(현〇〇면)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앞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자본금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0000 공급확대 지원사업 수행상황 점검 미이행 및 정산검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하동군(〇〇〇〇)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에서는 지역의 ○○○○ 보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및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 공 급확대 지원사업을 [표 1]과 같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표 1] ○○○○ 공급확대 지원사업 현황

연도별	보조	보조	보조	보조사업비(백만 원)					
간포크	사업수	사업명	사업자	계	도비	군비	자부담		
계	14건			6,114	973	2,895	2,246		
2017	1건		₩0000 -	340	105	105	130		
2018	3건	○○○○ 공급확대		1,681	215	838	628		
2019	5건	지원사업		2,101	330	1,103	668		
2020	5건			1,992	323	849	820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미이행 및 지도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지방보조금 관리 기준」V.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하여야 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동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 수행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보조사업이 불가피하게 회계 연도내 미 완료시는 보조사업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승인 및 보조금 이월 등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에서는 보조사업자 ㈜○○○○가 [표 2]과 같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시행한 14건의 ○○○○ 공급확대사업 중 13건의 보조사업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보조사업 사업기간을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다 최소 2일에서 최대 165일 초과하여 시행하였음에도 수행상황 점검을 하지 않았고,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기간 변경 승인 요청을 받아 사업기간 변경 승인 처리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업무를 부적정하게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7. 9월 도 하동군 종합감사에서 보조금 일괄교부와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없이 진행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된 바 있음에도, 이번 감사 시까지 동일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표 2] ○○○○ 공급확대 지원사업 사업기간 초과 내역

구분	사업명(사업구간)	교부결정 사업기간	실제 사업기간	비 고 (초과기간)
계	14건			
1	하동초~송림아트빌라	'17.04.26.~'17.12.30.	'17.04.26.~'18.02.10.	42일
2	청탑예식장, 하동읍사무소2차 등	'18.04.10.~'18.12.31.	'18.04.10.~'19.03.08.	67일
3	하동여자고등학교 일원	'18.02.20.~'18.12.31.	'18.02.20.~'19.03.08.	67일
4	하동한다사아파트~비파삼거리	'18.08.27.~'18.12.31.	'18.09.16.~'19.03.05.	64일
5	하동읍사무소~알프스종합복지관	'19.05.07.~'19.06.30.	'19.06.03.~'19.06.05.	-
6	하동 KT 빌딩 일원	'19.06.13.~'19.09.30.	'19.06.22.~'19.10.29.	29일
7	하동경찰서, 비파마을 일원	'19.07.17.~'19.11.30.	'19.08.23.~'20.01.04.	45일
8	하동농협일원	'19.03.18.~'19.06.30.	'19.03.19.~'19.09.28.	90일
9	적량 G/S, 비파삼거리 일원	'18.12.01.~'19.05.31.	'18.12.21.~'19.06.02.	2일
10	하동신촌마을 일원	'20.01.07.~'20.04.30.	'20.01.28.~'20.10.12.	165일
11	기아자동차 일원	'20.03.23.~'20.06.30.	20.04.09.~'20.09.24.	86일
12	원광평마을 일원	'20.04.01.~'20.06.30.	'20.05.14.~'20.11.10.	133일
13	공설시장 일원	'20.05.25.~'20.08.31.	'20.05.25.~'20.12.18.	109일
14	대망파크맨션 일원	'20.06.22.~'20.10.31.	'20.06.25.~'20.12.16.	46일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검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을 확정하여야 하며, 정산검사 결과 지방보조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량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하며 정산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제8조,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및 소음·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하동군수는 ○○○○ 공급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성 또는 준공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확정한 후 정산검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에서는 보조사업자 ㈜○○○○가 [표 3]와 같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완료한 12건의 ○○○○ 공급확대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에 안전관리비에서 집행 불가능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공사 안내표지판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도, 면밀히 검토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보조금 8,245천 원을 과다 지급하여 정산검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있다.

[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

(단위 : 천 원)

МГ	보조	ᆸᅮ	ᆸᅮ	설계		용도	외 사용	금액		위반사항		
연도	사업	보조	보조	는 " 반영	ᅰ		보조금		T I L	(사용불가		
별	. 수	사업명	사업자	금액	계	소계	도비	군비	자부담	내역)		
계	12건			13,443	13,334	8,245	1,928	6,317	5,089			
2017	1건	000		1,360	1,360	840	420	420	520			
2018	3건	○ 공급확 대 지원사	대	대	확 (주)	7,070	7,070	4,291	797	3,494	2,779	- 현수막 제작
2019	4건				대		000	3,369	3,369	2,074	336	1,738
2020	4건	시전시 업		1,644	1,535	1,040	375	665	495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실무담당자 및 실무책임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업무 매뉴얼 작성과 관련 법규 업무연찬으로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위반하여 ○○○○ 공급확대 지원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 (현, ○○○)과 지방○○○○ ○○○○(현, ○○○), 지방○○○○ ○○○○ (현, ○○○)과 ○○○○○ 공급확대 지원사업의 부적정한 처리와 업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 지방○○○○ ○○와 지방○○○○○○○○○○○○○○아이(휴직), 지방○○○○○○○○○○○○○○○○아이(현, ○○○○과)을「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주)〇〇〇〇]에게 과다 지급된 보조금 8,245천 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2019년 ㅇㅇㅇㅇㅇㅇ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하동군(〇〇〇〇)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에서는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및「어촌·어항법」,「○○○○○○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하는 '2019년 ○○○○○○○사업'을 ○○○○○○○(이하 "○○"이라한다.)에 위탁하여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2019년 ○○○○ 300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11 ·	· /
보조	사업기간	위치	보조	사업내용	711	보기		-
사업명			사업자	12 "0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17,479	12,235	1,573	3,671
0000 000사업 (000)	2019년 ~ 2021년	하동군 ○○○ ○○○	0000	- ○○○광장 A=3,171m² - 수상레저기반시설 L=120m - 어촌문회복합센터 1개소 등	9,450	6,615	850	1,985
0000 000사업 (000)	2019년 ~ 2021년	하동군 ○○○ ○○○	0000	- ○ ○ ○ 광장 A=1,634m² - 나눔센터 A=665m² - 철새탐조대 A=189m² 등	8,029	5,620	723	1,686

2. 2019년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지방보조금 교부) 및「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보조신청), 제15조(교부결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를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하동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산출기초를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를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에서는 '2019년 ○○○○○○아업(○○○, ○○○)'의 보조사업자인 공단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표 2]와 같이 3차례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하동군에 제출하면서 사업계획서 상 사업비의 산출기초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설계내역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금액산정의 오류 등을 조사·검토할 수 없는데도 2019. 4. 18. 61억 원, 2020. 1. 9. 78억원, 2021. 1. 8. 34억원의 보조금을 사업계획서 보완요청 및 산출금액 조사·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교부결정 하였다.

[표 2]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산출기초 현황

(단위·백만 원)

								(<u> 인위 : 백인 권)</u>
구분	사업계획서		사입	법비			산출기초	•	비고25)
下正	제출일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사업비	수수료	<u> </u>
계		17,479	12,235	1,574	3,670	17,479	16,974	505	
2019년 보조사업	2019.4.16	6,117	4,282	551	1,284	6,117	5,612	505	시행사업비
2020년 보조사업	2020.1.8.	7,866	5,506	708	1,652	7,866	7,866	-	사업비, S/W사업비, 기타
2021년 보조사업	2021.1.7.	3,496	2447	315	734	3,496	3,496		순공사비, 자재비, 부대비

²⁵⁾ 사업계획서상에 산출기초를 작성하면서 해당내용으로 사업비만 구분되어 있을 뿐 산출근거나 기초는 명기되지 않음

그 결과 2021. 7. 12.에서 7. 20.까지 감사기간 중 공정비용을 검토한 결과 공사설계예산서 상에 [표 3]과 같이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잘못 적용하여 데크설치비 및 앵커볼트 설치비 등 과다 계상된 54,190천 원과 중복·불필요한 공종에 계상된 53,750천 원, 총 107,940천 원의 보조금이 과다하게 교부결정 된 사실이확인되었다.

[표 3] 공사설계예산서 공사비 재산정

(단위 : 천 원)

사업명	지그병	내 용		사업비	, = ,	비고
사태경	지구별	네 ㅎ	당 초	재산정	증△감	<u>п</u> 4
계			269,465	161,525	△107,940	
		소 계	216,149	111,755	△104,394	
		콘크리트 치핑 제외(1,554m² → 0)	53,243	-	△53,243	불필요
2019년	000	데크 설치비 과다계상 (내력 16.82t → 내력 10.28t, 비내력 6.54t)	92,143	84,518	△7,625	표준품셈 적용오류
300		앵커볼트 단가 과다계상 (35,974원/ea → 13,847원/ea)	70,763	27, 🔾	△43,526	표준품셈 적용오류
사업		소 계	53,316	49,770	△3,546	
	000	데크 설치비 과다계상 (내력 9.64t → 내력 7.07t, 비내력 2.57t)	52,809	49,770	△3,039	표준품셈 적용오류
		컨테이너 사무실 중복(1개소 제외)	507		△507	중복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실무담당자의 업무연찬부족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보조금 관련 법규숙지와 업무연찬을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불필요 공정과 과다 계상된사업내용에 대해선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변경 승인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하여 2019년 ○○ ○○○○아업(○○○, ○○○) 보조금 교부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 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9조에 따라 불필요 공종 및 과다 설계되어 부적정하게 교부된 보조금 107,940천 원은 보조사업 사업계획 변경 또는 감액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징계·훈계·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매각 위법·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하동군(00000, 00000)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에서는 [표 1] 및 [그림]과 같이 '하동 ○○○○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진·출입로²⁶)확장에 필요한 ○○○ ○○○○○먼지(면적 53㎡, 이하 "보상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하동군 소유의 ○○○ ○○○○○○번지(면적 66㎡, 이하 "공유재산토지"라 한다.)를 용도폐지하여 하동군 ○○○○○로 재산을 이관하였다.

그리고 하동군 ○○○○이에서는 2019. 11. 14. 공유재산토지를 보상토지의 소유자 중 한 명인 ○○○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다.

【표 1】 공유재산 취득·매각 추진 현황

<생략>

【그림】 공유재산 위치도와 이용 현황

<생략>

^{26) ○○○○○ ○○○}으로 군계획시설 편입부지로 고시되었으나, 이후 주차장에 '하동 ○○○○○'이 들어오면서 ○○○ 진·출입로 확장에 필요한 부지에 공여됨.

2. 수의매각 목적 행정재산 용도폐지 부당처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조, 제3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한다.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²⁷⁾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고,「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4 조에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재산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우 교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8조 제1항에서 행정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등 서로 유사한 재산과 교환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제1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토지는 교환을 제한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 등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동군 ○○○○○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 보상한 경우에는 해당토지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다른 토지와의 교환조건으로 보상 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서는 아니되며, 설령 이건 교환 이외의 목적 으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더라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군수의 결정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²⁷⁾ 공유재산업무편람 제5절 용도의 폐지 및 변경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행정목적 기능을 상실한 공용재산 등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용도폐지 할 경우 장래 사용목적,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함을 유의사항에 명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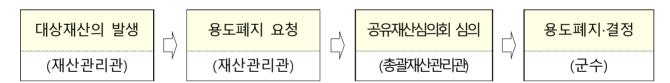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에서는 2018. 12. 27. '하동 ○○○○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진·출입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보상토지²⁸⁾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 여 처리하면서 ○○○²⁹⁾에게 추후 대체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협의하여 보상하였다.

그 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처리를 완료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른 교환을 위한 용도폐지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 위 보상 협의시 ○○○○○와 구두300로 협의 하였다는 사유로 보상토지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며 철거에 불응하고 대체부지를 요구하자, ○○○에게 대체부지 제공을 목적으로 행정재산 ○○○○인지를 ○○○○○○(1,577㎡→ 66㎡)번지로 분할하고 2019. 8. 8.에 용도폐지하여 같은 해 8. 12. 공유재산 담당부서인 ○○○○○에 용도폐지를 통보하였다.

더욱이 공유재산토지는 주차장내 소공원으로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지를 위해서는 [표 2]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군수의 결정을 받아 처리해야 함에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군수의 결정 절차 이행 없이과장 전결로 임의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였다.

【표 2】용도폐지 절차



3.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8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

²⁸⁾ 하동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2017. 12. 1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조서에 ○○○ ○○○ ○○○-○○(○○○-○○ 분할전 지번) 포함

^{29) ○○○-○○}번지 공동소유자 중 1인

³⁰⁾ 실무책임자 ○○○이 ○○○ ○○○ ○○○-○(일부 66㎡)를 대체부지로 제공하겠다고 구두로 협의함

쳐야 하며, 다만,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 재산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일반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장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동군 ○○○○○에서는 공유재산 재산가격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장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하동군 ○○○○○에서는 2019. 4. 26.에 ○○○○○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요청 시 공유재산토지가 [표 3]과 같이 재산가액이 60,799천 원으로 작성된 문서를 접수하였고, 같은 해 7. 25.에 교환을 위해 실시한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조서에도 58,212천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재산가격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매각할 공유재산토지가 2019. 8. 8. 분할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표준공시지가 산정 없이 임의로 공유재산토지의 공시지가를 396천원/m²으로 책정한 뒤 재산가격을 26,136천 원으로 산정하여 같은 해 10. 14. '군유 일반재산 처분계획'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11. 14. 수의계약으로 ○○○에게 111,606천 원에 매각하였다.

【표 3】공유재산토지 공시지가 및 재산가액

(단위 : m², 천 원)

구분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m'당 공시지가	재산가액	비고
매각심의안 (2019. 4. 26.)		000			921	60,799	· *분할전 모지번
교환심의안 (2019. 7. 25.)	하동군	000-	대지	66	882	58,212	**분할 예정면적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 공유재산토지를 분할 전 모지번인 ○○○ ○○○-○ 번지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재산가격을 산정한 결과도 [표 4]와 같이 58,212천 원 에서 59,400천 원으로 공개입찰로 매각하여야 할 대상임이 확인되었다.

【표 4】 공유재산토지에 대한 재산가격 비교

(단위 : 천원)

지 번		면적 (m²)	재산가격 비교					
(이 건 공유재산)	용 도		기준	m'당 가격	재산가격	비고		
	일반 재산	66	개별공시지가(모지번)	882	58,212	2019.1.1.기준		
000			개별공시지가	882	58,212	2020.1.1.기준		
			표준공시지가	900	59,400	2020.1.1.기준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공유재산 매각 결정을 위해 군수의 방침결재를 받기 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함에도 교환을 위한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사항을 '매각'심의를 거친 것으로 공유재산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였다.

그 결과 하동군 ○○○○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공유재산을 ○○○에게 부당하게 수의매각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 ○○○○○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야 함에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법령 미숙지로인해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차후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위법 사항이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에서는 공유재산토지 매각 시 부동산공부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인근 지번을 적용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로 산정되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으며, 앞으로 공유재산담당자 업무 교육 및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조 등을 위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당시 실무책임자 ○○○○○ 지방○○○○ ○○○(현 ○○○○, ○○○ ○○○○○)과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공유재산을 위법·부당하게 수의 매각한 실무담당자 ○○○○ 지방○○○○ ○○○, 실무책임자 ○○○○ 지방○○○ ○○○(현 ○○○○), 감독 책임자 ○○○○ 지방○○○○ ○○○(현 ○○○○)을 「지방공무원법」제72조(징계 등 절차)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징계)
- ② 행정재산을 수의 매각 목적으로 부당하게 용도폐지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00000 지방00000 000(현 0000, 000), 실무책임자 00000 지방0000 000(현 000)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③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유재산 취득·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 관련자 ○○○○○ 지방○○○○○ ○○○은 '훈계' 처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시정 요구

제 목 취득세 부과 및 감면 추징 누락

소 관 기 관 하동군(〇〇〇〇)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에서는 「지방세법」제7조 등에 따라 2017. 10. 1.부터 2021. 7. 20.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취득세³¹⁾ 총 1,622건 2,742백만 원을 수시부과 하는 등 취득세 부과 및 감면 후 추징 업무를 하고 있다.

[표 1] 취득세 수시부과 현황(감면 추징 포함)

(단위: 건, 천 원)

구분	건수	계	취득세	농특세 등	비고
계	1,622	2,504,540	2,502,117	239,423	
2017 (10~12월)	202	248,940	222,424	26,516	※ 2020년은 ○○ ○○○○(주)
2018	124	188,461	168,611	19,850	감면 추징액 134건 1,452백만원 으로 대폭 증가
2019	257	374,977	330,323	44,654	프로 네국 6기
2020*	616	1,691,487	1,565,626	125,861	
2021 (1~7월)	423	○○○,675	215,133	22,542	

³¹⁾ 취득세 병기세목인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포함, 이하 부과 및 감면 추징 누락 취득세액에도 같다.

2. 지목변경 등 취득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제7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등에게 부과하며,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9조에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부동산 취득에 적용할 표준 세율로 농지는 1천분의 30을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농지의 범위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지방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결산서 등 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장부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금액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아울러「지방세법」제20조 및 제21조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장부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32)에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³²⁾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과세표준 과소신고 및 일부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말함

따라서 하동군 ○○○○○에서는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과 불법건축물 등의 사실상 취득한 경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농업 보조금을 지원 받아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또는 누락한 사실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에서는 [표 2]와 같이 지목 변경 미신고 80건, 74,344천 원, 농업 보조금 지원 건축물 과표 누락 10건, 16,788천 원, 1년 초과 임시 건축물 14건, 44,535천 원 등과 같이 2017. 10. 1.부터 2021. 7. 20.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총 121건 151,771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2] 취득세 부과 누락 현황

(금액 단위 : 천 원)

연번	과세 구분	부과 사유	건수	추	징(예정) 세약	깩
한단	의제 구군	구의 시ㅠ	신구	계	취득세	농특세 등
		계	121	151,771	138,428	13,343
1	지목 변경	지목 변경 미신고	80	74,344	68,420	5,924
2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취득	1	2,798	2,466	332
3	불법건축물	등기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취득	6	7,656	6,901	755
4	과세표준 누락	농업 보조금 지원 건축물 과표(공사비) 누락	10	16,788	14,881	1,907
5	임시건축물	1년 초과 임시(가설) 건축물	14	44,535	41,051	3,484
6	세율 적용 부적정	농지가 아님에도 농지 세율 적용(1% 과소)	10	5,650	4,709	941

[출처 : 하동군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2017. 9. 26. 도 종합감사에서 지목 변경과 농업 보조금 지원 건축물은 [표 3]과 같이 취득세 총 118건 166,354천 원을 부과 누락하여 신분상 처분과 재정상 '시정' 조치로 지적된 바 있음에도, 이번 감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지적되어 지목 변경과 농업 보조금 지원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3] 2017년 도 종합감사 취득세 부과 누락 지적 현황

(금액 단위 : 천 원)

과세 구분	Halilo	건수	부	백	비고	
	부과 사유	신구	계	취득세	농특세 등	미끄
		118	166,354	149,560	16,794	
지목 변경	지목 변경 미신고	85	52,964	48,150	4,814	
과세표준 누락	농업 보조금 지원 건축물 과표(공사비) 누락	33	113,390	101,410	11,980	

[출처 : 하동군 제출 자료 재구성]

3. 취득세 감면 추징 누락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하 이장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는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확인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동군 ○○○○○에서는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 및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 감면 받은 대상 물건에 대해 유예 기간 내직접 미사용하거나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에서는 [표 4]와 같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으로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나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농업법인,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이 취득세를 감면 받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취득세 15건 87,727천 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표 4] 취득세 감면 추징 누락 현황

(금액 단위 : 천 원)

연번	고세 그브	ᅕᄭᅟᄮᄋ	건수	추징 세액			
[건건	과세 구분 추징 사유		신구	계	취득세	농특세 등	
	계		15	87,727	78,024	9,703	
1	자경농민 농지 취득	경작 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 사용(건축물 부속 토지)	6	9,681	8,337	1,344	
2	농업법인 영농·가공 등 목적 취득	영농 등 직접 사용 3년 미만 상태 매각 등	8	69,012	61,675	7,337	
3	창업벤처 중소기업 사업용 부동산 취득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미사용	1	9,034	8,012	1,022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 ○○○○○에서는 세무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 부족, 법령 미숙지,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취득세 부과 및 감면 추징 누락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인수인계와 업무 연찬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지방세법」제7조 등을 위반하여 지목 변경, 농업 보조금 지원 건축물 등 취득세 부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 지방○○○○ 이○과 취득세 부과 및 감면 추징 누락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 지방○○○○ ○○○(현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을 위반하여 농업법인 등 감면 조건 위반에 따른 취득세 감면 추징을 누락한 실무담당자 OOOOO 지방OOOO OOO (현 OOO), 지방OOOOO OOO(현 지방OOOO, OOO)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③ 「지방세법」제7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등에 따라 취득세 부과 누락분 121건, 151,771천 원과 감면 추징 누락분 15건, 87,727천 원에 대한 취득세 총 136건, 239,498천 원에 대하여 추징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시정 요구

제 목 재산세 감면 추징 누락 및 부과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하동군(〇〇〇〇)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에서는 「지방세법」 제106조 등에 따라 2017. 1. 1.부터 2021. 7. 20.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³³⁾를 부과하고 있다.

[표 1]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건, 천 원)

I d F	정기분					과세			
년도	건수	금액	재산세	지방 교육세등	건수	금액	재산세	지방 교육세등	과세 대상
2017	48,529	4,944,065	3,669,834	1,274,231	370	73,784	58,288	15,496	
2018	49,890	5,285,576	3,938,086	1,347,490	201	29,492	15,126	14,366	
2019	51,539	5,763,415	4,305,218	1,458,497	120	26,250	22,486	3,764	토지, 건축물
2020	52,704	6,039,071	4,509,080	1,529,991	77	26,111	20,652	5,459	
2021	6,344	2,198,790	1,256,777	942,013	47	2,053	1,554	499	

³³⁾ 재산세 병기세목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 이하 감면 추징 및 부과누락 재산세액에도 같다.

2. 산업단지 미조성에 따른 재산세 감면 추징 누락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동군 ○○○○○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공사 감면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에서는 [표 2]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을 시행한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³⁴⁾가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총 108,618천 원을 감면 받았으나, 군 자체 점검으로 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아 2020. 4월부터 6월까지 감면 받은 취득세 134건, 1,452,023천 원은 추징³⁵⁾하였음에도 재산세는 감면 추징하지 않았다.

또한 ○○산업단지 부지는 2021. 1. 29.에 하동군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2021. 3. 18.에 ○○○○○○(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되어 추징 사유가 명확히 발생하였음에도 2021. 7. 20. 감사일 현재까지 재산세 108,618천 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어 산업단지 미조성 재산세 감면 추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34)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 주식회사이며, 일부 토지를 ○○○○○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재산세가 ○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에 각각 부과됨.

³⁵⁾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며, 각 토지 취득일의 3년이 된 시점이 추징 사유일이 되고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부과제척 기간 5년 이내에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여야 함.

[표 2] 산업단지 미조성 재산세 감면 추징 누락 현황

(금액 단위 : 천 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08,618	24,240	17,503	19,855	22,473	24,547
○○○○○ 주식회사	29,808	24,240	2,070	13	1,674	1,811
000000 회사	78,810	_	15,433	19,842	20,799	22,736

[출처 : 하동군 제출 자료 재구성]

3. 농지 일시사용허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 부과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르면 전·답·과수원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36)으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천분의 2에서 최고 10억 원 초과 시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를 적용하고, 잡종지 등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37)으로 5,000만원 이하 1천분의 2에서 최고 1억원 초과 시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 3] 재산세 토지 세율

별도합산:	과세 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 원 이하	1,000분의 2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만 원+2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 원+5,000만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0억 원 초과	280만 원+10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1억 원 초과	25만 원+1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³⁶⁾ 건축물의 부속 토지, 차고용 토지 등 업무 또는 경제 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

³⁷⁾ 잡종지, 나대지 등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따라서 하동군 ○○○○○에서는 해당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분리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등 변동 자료를 확인하여 잡종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사실상의 현황에 맞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에서는 [표 4]와 같이 ㈜○○○○ 등 28건, 진교면 진교리 ○○○-○번지 등 48필지가 공사 현장 사무실 설치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지 있지 않고 있어, 재산세 정기분 부과 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분리과세로 착오 부과38)하여 재산세 28건 6,467천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다.

[표 4] 농지 일시사용허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 부과 현황

(금액 단위 : 천 원)

구분	소재지	부과 사유	과소 부과액 (A-B)	정당 세액 (A)	기부과 (B)
계			6,467	9,604	3,137
㈜○○○ 등 26건	○○○ ○○○ ○○○-○외 40필지	현황 과세 착오 (분리과세→별도)	6,083	8,981	2,898
㈜○○○ 등 2건	○○○ ○○○ ○○○-○외 6필지	현황 과세 착오 (분리과세→종합)	384	623	239

[출처 : 하동군 제출 자료 재구성]

4. 건축물 재산세 부과 누락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법」제104조에 따르면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³⁸⁾ 분리과세로 착오 부과내역 : 5년간 1건, 4년간 3건, 3년간 3건, 2년간 7건, 1년 14건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5조에 건축물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한다고 하면서, 재산세 과세 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동군 ○○○○이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누락 한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나.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표 5] 건축물 재산세 부과 누락 현황

(단위: m², 천 원)

				<u> </u>	비고		
납세자명	소재지	면적	부과 사유	합계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	(부과 연도)
00000	000 000	232.9	건축물 부과누락	1 212	599	613	2019 ~
000000	00-0	232.9	('18. 7. 21.준공)	1,212	599	013	2021

[출처 : 하동군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세무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 부족, 관련 법령 숙지 미흡으로 재산세 감면추정 누락과 부과 처리 부적정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지방세법」제106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등을 위반하여 재산세부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감면 추정을 누락한 실무담당자 OOOOO 지방 OOOO OOO(현 OOOO, OOO), 지방OOOO OOO, 실무책임자 OOOOO 지방OOOO OOO(현 OOO), 지방OOOO OOO을「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혼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지방세법」제106조 등을 위반하여 재산세 부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 담당자 ○○○○ 지방○○○○ ○○○, 지방○○○○ ○○○(현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③「지방세법」제106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등에 따라 재산세 부과 누락분 7,679천 원과 감면 추징 누락분 108,618천 원에 대한 재산세 총 116,297천 원에 대하여 부과·추징 조치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00000 00000 보조사업 관리·감독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하동군(〇〇〇〇)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에서는 ○○○을 통한 동서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 및 ○○ 등 특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표 1]과 같이 '○○○○○ ○○○○○ ○○○○'를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추진하고 있다.

[표 1] ○○○○○ ○○○○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기간	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인포 글	사업기선 보호사	포포시 답시	계	도비	군비	계	도비	군비
	계		835,000	50,000	785,000	835,000	50,000	785,000
2018년	2018. 8. 31. ~ 9. 2.	00000 0000000 000추진위원회	400,000	20,000	380,000	400,000	20,000	380,000
2019년	2019. 7. 26. ~ 7. 28.		395,000	15,000	380,000	395,000	15,000	380,000
2020년	2020. 10. 31		40,000	15,000	25,000	40,000	15,000	25,000

2. 보조사업 수익금 및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가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기부금품39)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2조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구체적인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10억 원 이하는 도지사 10억 원 초과: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고,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하동군 ○○○○○에서는 보조사업을 통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보조금 교부조건에 수익금의 반환 또는 사용용도를 명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1천 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ㅇㅇㅇㅇ이에서는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가 매년

^{39) &}quot;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최되는 행사로서 행사내용에 따라 홍보부스비, 향토식당 운영, ○○잡기 체험행사 등으로 수익금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고 [표 2]와 같이 2018년과 2019년 총 57,493 천 원의 수익금이 발생되었음에도 수익금에 대한 사용용도 및 반환의 조건을 붙이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정산검사 시에도 수익금 발생 및 지출내역,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완료하여 보조사업 수익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 ○○축제 수익금 및 기부금 사용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구 분 계 수익금		협찬금
계	181,493	57,493	124,000
2018년	78,733	16,733	62,000
2019년	102,760	40,760	62,000

※ 홍보용 물품 구입, 바지선 수선, 사용권 교환비용 등에 사용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사업자 지방계약법령 미준수에 따른 지도·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 제23조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고,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 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 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한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5천만 원이하인 공사, 용역・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 원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하동군 ○○○○○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경비 집행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표 3] ○○○○○ ○○○○ ○○○○ 행사·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업체명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내용	적정 계약방법	계약방법
합 계	4건	143,000				
소 계	3건	118,000				
	000000	50,000	2019.7.18.	-	G2B에 의한 2인견적 수의계약	1인견적 수의계약
2019	000000	40,000	2019.7.18.	-	G2B에 의한 2인견적 수의계약	1인견적 수의계약
	0000	28,000	2019.7.31.	-	G2B에 의한 2인견적 수의계약	1인견적 수의계약
2020	000000	25,000	2020.10.30.	-	G2B에 의한 2인견적 수의계약	1인견적 수의계약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 [별표 11]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행사에 소요되는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하동군 ○○○○○에서는 ○○○○○○○○○○○○○○○ ○○축제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보조사업자인 '○○○○○○○○○○○○○주진위원회'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표 4] 행사운영비 집행현황

(단위: 천 원)

연도별 사업명		집행액	비고
	계	106,559	
2018년	제○회 ○○○○ ○○○○축제	70,412	리플릿 및 배너제작, 공연료 지급 등
2019년	제○회 ○○○○ ○○○○축제	18,647	배너제작, 책임보험가입, 전시품제작 등
2020년	000000	17,500	가요제 중계영상 제작, 공연료 지급 등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5.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제32조의4, 제32조의6,「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 제2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 보조사업이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 보조사업

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부가가치세법」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법인,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40)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동군 ○○○○○에서는 보조사업 정산 시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조사·검토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1) 임의로 보조사업자 변경 및 정산서류 미구비

^{40) 1~6}월 매입자료 : 7. 25.까지, 7~12월 매입자료 : 다음해 1. 25.까지

[표 5] 임의로 보조사업자 변경(재교부) 추진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사업명	교부단체	교부일자	교부액	비고
	합계	16건		119,300	
	소계	7건		61,000	
			2018.7.2.	30,000	증빙없음
			2018.7.2.	1,000	증빙없음
2018년			2018.7.4.	3,000	증빙없음
			2018.7.6.	20,000	증빙없음
			2018.7.16. 2018.8.30.	5,500	2차지출 증빙없음
			2018.7.27.	1,000	증빙없음
			2018.7.27.	500	증빙없음
	소계	9건		58,300	
			2019.7.18.	40,300	
			2019.7.18.	3,000	
			2019.7.18.	3,000	
2019년			2019.7.18.	3,000	
2013			2019.7.31.	4,000	증빙없음
			2019.7.23.	3,000	
			2019.7.23.	500	
			2019.7.23.	1,000	
			2019.7.23.	500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불필요한 과업 포함한 용역계약 체결으로 예산낭비

[표 6] 불필요한 과업 포함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용역사업명	계약업체	부적정 과업	계약금액	세액
	계			26,600	2,660
2018년	제○회 ○○○○○	000000	시상금 지급	9,000	900
2019년	제○회 ○○○○○	000000	시상금 지급	8,800	880
2020년	제○회 ○○○○○	000000	시상금 지급	8,800	880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용역 계약금액 외 추가경비 지급으로 예산낭비

하동군 ○○○○○에서는 보조사업자 ○○○○○○○○○○○○○○○○○○○추진위원회가 2019년 행사장 정비를 위해 2019. 7. 8. 11,000천 원으로 굴삭기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계약서에 임차비 외에 다른 경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도 장비에 대한 유류대 5,270천 원을 추가 지급하여 지급 할 의무가 없는 경비까지 지출하여 축제예산을 낭비하였음에도 시정 등 조치 없이 정산검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실이 있다.

[표 7] 임차계약 장비 유류대 지급 내역

(단위: 리터, 천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일자	장비	유류종류	유류량	지급액	비고			
	계		3,747	5,270				
2019.7.11.			542	742				
2019.7.12.			297	544				
2019.7.13.			376	515				
2019.7.19.	포크레인		407	558	ᇸᆸ			
2019.7.20.		경유	71.0	300	411	행사장 참사정비		
2019.7.23.			353	483	하상정비			
2019.7.24.			395	541	작업			
2019.7.25.						270	370	
2019.7.29.			445	610				
2019.7.31.			362	496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보조사업자가 2018년 주행사장 돔텐트 설치 등 3개 용역(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경비를 집행하면서 계약체결 금액 보다 임의로 총 2,050천 원을 초과 집행하였음에도 시정 등 조치 없이 정산을 확정한 사실이 있다.

[표 8] 용역(임차) 경비 과다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지출내역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계약업체	지급금액	비고
계	3건		27,500		29,550	2,050천원 초과지급
2018	7행장됨15 생비재	2018.7.27.	19,000	0000	19,600	600천 원 초과지급 (선금13,300 잔금 6,300)
2018	개막 축하공연료 지급	2018.8.30.	4,500	주부사 ○○○	4,950	450천원 초과지급 (선금2,475 잔금 2,475)
2018	문화공연료 지급	2018.9.11.	4,000	000 00	5,000	1,000천원 초과지급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4) 간이세금계산서 및 허위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제출에도 조치 없이 정산처리

하동군 ○○○○○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에 [표 9]와 같이 총 42건, 255,943천 원의 지출증빙자료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거래처로부터 간이(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였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미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내역 확인 및 시정 조치 없이 정산을 확정한 사실이 있다.

[표 9] 간이(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현황

(단위<u>: 천 원</u>)

연理	지출내역	지출일자	업체명	발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42건		232,673	23,270
	소 계		28건		144,313	14,433
2018	시스템(ED) 용역 선급금	20180712		20180712	9,000	900
2018	영상중계 용역 선급금	20180712		20180712	4,727	473
2018	대·홍·평 왕 선급	20180712		20180712	9,000	900
2018	개막(폴리) 행선 급	20180716		20180716	3,750	375
2018	물품임대	20180725		20180725	15,319	1,532
2018	물품임대	20180725		20180725	401	40
2018	그늘막 설치	20180727		20180727	8,727	873
2018	살수차 임대	20180727		20180727	450	45
2018	행장 정병 정비 임대	20180727		20180727	1,200	120
2018	행장 정병 정비 임대	20180727		20180727	2,700	270
2018	줄대기 운영 물품 귀입	20180730		20180730	2,830	283
2018	수영장임대	20180731		20180731	1,500	150
2018	행사 운영 물품 구입	20180801		20180801	514	51
2018	행사 운영 물품 구입	20180808		20180808	1,700	170
2018	모래조각 제작비	20180816		20180816	9,091	909
2018	몽골텐트잔금	20180829		20180829	6,737	674
2018	사진 촬영 선금	20180830		20180830	2,045	205
2018	LED(잔금)	20180903		20180903	9,000	900
2018	영상중계잔금	20180903		20180903	4,727	473

연결	지출내역	지출일자	업체명	발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018	무대잔금	20180903		20180903	9,000	900
2018	음향	20180906		20180906	13,636	1,364
2018	꺠씩줄리기해~잠	20180910		20180910	3,750	375
2018	힐링프린지공연	20180911		20180911	3,400	340
2018	불꽃놀이 대금	20180911		20180911	2,364	236
2018	교통통제 안내 현수막	20180919		20180919	109	11
2018	사진 촬영 잔금	20181107		20181107	455	45
2018	음향	20180906		20180906	4,545	455
2018	트러스등	20180906		20180906	13,636	1,364
	소 계				88,360	8,837
2019	무대음향	20190718		20190718	17,000	1,700
2019	무대음향	20190718		20190718	16,000	1,600
2019	무대음향	20190718		20190718	18,000	1,800
2019	장비 임대료	20190802		20190802	10,000	1,000
2019	살수차 임대	20190806		20190806	1,800	180
2019	장비대	20190806		20190806	2,028	203
2019	장비대 지급	20190807		20190807	2,500	250
2019	의병음 되야 을	20190807		20190807	4,091	409
2019	개막 사전해가 음해용	20190807		20190807	2,474	247
2019	사람병및프북제작용역	20190820		20190820	3,797	380
2019	조화 넝쿨 설치	20190820		20190820	2,950	295
2019	선반 제작	20190820		20190820	2,175	218
2019	장비대 지급	20190820		20190820	1,000	100
2019	바나나보트 임대료	20190814		20190814	4,545	455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이번 감사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조회한 결과 [표 10]과 같이 2018년부터 2020년 까지 ○○○○○○ 행사용역 업체 등 4건, 121,000천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이력이 없어 승인번호를 조작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정산 증빙서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0]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지출내역	지출일자	업체명	발급일자 (발급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위반 사항
계	4건				121,000	12,100	
2018	2018년 (출연료 등)	2018.7.11.	00000000	'18.07.11 (10000000- 49010374)	16,636	1,664	허위 계산서
2019	2019년 (조선 등)	2019.7.22.	000000	'19.08.07 (10000000- 68547784)	31,636	3,164	허위 계산서
2019	00000 0世,札里歸	2019.7.22.	00000000	'19.07.29 (10000000- 68947854)	36,364	3,636	허위 계산서
2020	200년 (출연료 등)	2020.11.4.		'20.11.04 (10000000- 55986369)	36,364	3,636	허위 계산서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연찬 부족으로 축제 정산 검사 등 관리·감독에 미흡함이 있었으며, 추후 업무 처리 시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지방재정법」제32조의4, 제32조의6 등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및 예산집행,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보조사업 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 실무담당자 ○○○○ 지방○ ○○○○ ○○(현 ○○○), 실무책임자 ○○○○ 지방○○○○ ○○(현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2020년 ○○○○○○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제32조의4, 제32조의6 등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및 예산집행,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보조사업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 「경상남도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③ 보조사업자가 미신고한 부가가치세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제54조 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조치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번호를 조작하여 허위로 증빙 자료로 제출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세금신고 이행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④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 요구

제 목 00분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심사 및 정산 검사 미실시

소 관 기 관 하동군(000과)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00과에서는 「하동군 000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2018년과 2019년에 [표 1]과 같이 각종 0000 및 단체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1]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에사고니모	예산과목 부기명(세부사업) -		예신	<u>·</u> ·액	
인 포	에진피폭	구기정(제구자首)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7,789,407	952,676	268,637	6,568,094
		소 계	3,455,589	242,948	161,295	3,051,346
	민간경상사업보조	000 개최 등 151개 사업	2,336,276	242,948	128,828	1,964,500
2018	민간행사사업보조	000 출전 등 59개 사업	847,733	-	32,467	815,266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000 일반운영비 등 7개 사업	271,580	-	-	271,580
	소 계		4,333,818	709,728	107,342	3,516,748
	민간경상사업보조	000 등 139개 사업	3,170,328	665,728	64,875	2,439,725
2019	민간행사사업보조	000 등 54개 사업	874,850	44,000	42,467	788,383
	민간단체법정운영 비 보조	000 일반운영비 등 7개 사업	288,640	-	-	288,640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32조의4, 제32조의6,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적합한지 심사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하동군 000과에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 심사·정산검사 시 보조금이 교부 목적과 관련 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정산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000과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표 2]와 같이 총 28개사업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중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매년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이행촉구없이 2021. 7. 20.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실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심사 및 정산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2] 정산 미실시 사업 현황

(단위: 천 원)

				(- 11
연도별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비	비고
합계		28개 사업	313,338	정사미실시 28건 실적보고서 미제출 22건
	소 계	11개 사업	232,230	정산미실시 11건 실적보고서 미제출 6건
2018	2018년 00를 위한 000 개최	하동군000	30,000	정산미실시
2010	하동군 000 운영	하동군000	15,600	"
	하동군000 운영	하동군000	5,000	"

연도별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비	비고
	하동군 000 사무실 운영	하동군000	5,000	"
	하동군000운영	하동군000	5,000	"
	제1회 하동군000 개최	하동군000	3,000	정산미실시 실적보고서 미제출
	제19회 000 참가	하동군000	2,000	"
	제30회 000	하동군000	1,800	"
	제11회 000 출전	하동군000	1,550	"
	제5회 000 출전	하동군000	1,200	"
	2018년 하동군000 일반운영비	하동군000	162,080	n
	소 계	17개 사업	81,108	정산미실시 17건 실적보고서 미제출 16건
	2019 0000 개최	하동군000	29,550	정산미실시 실적보고서 미제출
	2019년 0000 개최	하동군000	17,000	정산미실시
	제3회 0000 개최	하동군000	15,000	정산미실시 실적보고서 미제출
	제7회 0000 개최	하동군000	3,000	"
	2019 0000 참가	하동군000	2,700	"
	제3회 0000	하동군000	2,023	"
	제15회 0000 개최	하동군000	2,000	"
2010	제46회 0000 참가	하동군000	2,000	"
2019	2019 00000 참가	하동군000	1,850	"
	제30회 0000 참가	하동군000	1,800	"
	제21회 0000 참가	하동군000	710	"
	제3회 0000 출전	하동군000	675	"
	제7회 0000 출전	하동군000	600	"
	0000 출전	하동군000	600	"
	제6회 0000 출전	하동군000	600	"
	제8회 0000 출전	하동군000	500	"
	제6회 0000 출전	하동군000	500	"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연찬 부족으로 보조사업 관리·감독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 감독 및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지방재정법」제32조의6,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제22조 등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심사와 정산검사를 미 이행하고 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 실무책임자 ○○○○ 지방○○○○ ○○(현 ○○○○), 실무책임자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 · 시정 요구

제 목 ㅇㅇㅇㅇㅇㅇㅇㅇ 운영비 예산편성 및 정산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하동군(〇〇〇)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에서는 ○○○○○○○○○ 발전과 통일활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표 1]과 같이 매년 60 백만 원씩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1] ○○○○○○○○○ 운영비 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사업명	지원액	주요내용
	합 계	240,000	- 인건비 : 2명, 35,000천원
2018년		60,000	※ 2019년 ~ 수령자 1명 변경
2019년	000000000	60,000	- 운영비 : 16,759천원(인건비 제외)
2020년	운영비 지원	60,000	- ○○관련 사업비 : 91,932천원
2021년		60,000	· ○○○○ ○○○○ 등 12개 사업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민간단체법정운영비에 사업비를 예산편성 지원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제32조2,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제15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군수는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의 법령과 목적에의 적합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등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 [별표 11] 에 따라 민간단체법 정운영비는 소속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과금 등 시설운영비 등에 사용 하여야 하며,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다.

따라서 하동군 ○○○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경우 예산의 법령과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교부결정 하여야 하고,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시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행사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에서는 ○○○○○○○○○○○○○○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표 2]와 같이 ○○○○○○○ 등 12개 사업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에 계상하여 신청하였음에도 예산 법령과 목적의 적합성, 사업의 성격과 내용의적정성 등 검토 없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에서 사업비 총 91,932천 원을 부적정하게 예산 편성하여 지원한 사실이 있다.

[표 2] ○○○○○○○○○ 민간단체법정운영비에서 사업비 지원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지원 사업명	지원액
합계	12개 사업	91,932
소계	5개 사업	50,409
	제○○기 ○○○ ○○○	5,800
	2018년 ○○○ ○○○○	849
2018	2018년 ○○○ ○○ ○○○	26,400
	2018년 ○○○○○,○○○○○ 화합교류	2,012
	2018년 ○○○ ○○○○	15,348
소계	7개 사업	41,523

연도별	지원 사업명	지원액
	○.○운동 100주년 ○○○ ○○○	5,450
	2019년 ○○○ ○○○○	10,653
	2019년 ○○○ ○○○○	1,271
2019	2019년 ○○기 ○○○ ○○	17,638
2019	2019년 ○○○ ○○○, ○○○○○ ○○	4 751
	0000	4,751
	2019년 ○○○ ○○○	1,410
	0000 0000 00000	350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제32조의4, 제32조의6,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사업「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군수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하동군 ○○○에서는 보조사업 정산 시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조사·검토하여야 하고, 증빙서류가 누락되었으면 보조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1) 변경 승인 없이 보조금 집행 정산처리 부적정

그런데도 하동군 ○○○에서는 보조사업자 ○○○○○○○○○ 2018년 2019년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표 3]과 같이 2018년도에는 ○○○○○○를 해외연수로 변경하여 그 경비 충당을 위해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 견학 사업은 시행 하지 않고, 운영비는 축소 집행하여 11,400천 원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자문위원 해외 연수 경비로 집행하였고.

또한 2019년도에는 여성 평화통일 공감토크, 청소년 통일이야기 등 행사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개최하지 않고, 자문위원 해단식·출범식 등 4개 사업에 4,431천 원을 신설 집행하였음에도 시정 등 적정한 조치 없이 정산검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3] 변경승인 없이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집행내역	승인액	집행액	증감액	비고
	합 계	120,000	119,993	△7	
	소 계	60,000	59,993	△7	
2018년		2,000	2,012	12	
소 계	7,500	5,800	△1,700		

연도별	집행내역	승인액	집행액	증감액	비고
		15,000	26,400	11,400	국내→국외
		1,200	849	△351	
		6,500	-	△6,500	미실시
		14,000	15,349	1,349	
	운영비	13,800	9,583	△4,217	
	소 계	60,000	60,000	-	
		4,980	4,751	229	
		17,080	17,638	558	
		2,710	1,271	△1,439	
		17,050	16,103	947	
2019년		2,090	-	△2,090	미실시
20191		1,630	-	△1,630	미실시
		14,460	15,802	1,342	
		-	1,410	1,410	신설
		-	350	350	신설
		-	2,030	2,030	신설
		-	641	641	신설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종사자 복리후생비 임의 인상 집행 정산처리 부적정

또한 보조사업자 ○○○○○○○○○○○○○○ 가 2019년 ○○○○에 대한복리후생비 수당을 지급하면서 [표 4]와 같이 승인한 금액과 달리 매월 100천 원씩인상하여 9월에서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400천 원을 증액 지급 하였음에도 정산 시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정산검사 적정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4] 2019년 변경승인 없이 수당 증액 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지출항목	지급내역	승인액	집행액	증감액	비고
	합 계	1,920	2,320	400	
	9월 ○○○○ 수당	480	580	100	
보기중재비	10월 ○○○○ 수당	480	580	100	수당
복리후생비 -	11월 ○○○○ 수당	480	580	100	임의 증액
	12월 ○○○○ 수당	480	580	100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4. 보조사업자 회계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여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동군 ○○○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사업자 ○○○○○ ○○○○○ ○○○○○이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자문위원 연수 등 행사 사업비가 있으면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 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조 사업자가 2018년 자문위원 해외 연수사업 추진 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G2B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할 행사진행 용역을 (38,400천 원)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 ○○○○○○○○○○○○○○○○이서 2018. 1. 1.부터 2020. 12. 31. 까지 [표 5]와 같이 운영비 216건 138,133천 원을 지출하면서 전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출하였음에도 회계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5] 지출결의서 없이 보조금 지출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건 수	216	53	116	47
집행액	138,133	59,993	60,000	18,140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5.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제32조의4, 제32조의5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20조, 제134조, 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세법」제103조의13부터 제103조의15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동군 ○○○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월 근로자에게 인건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표 6]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납부 현황

(단위 : 천 원)

					(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미납부 인원	4명	1명	1명	1명	1명
미 납 부 액	1,156	216	431	446	63
- 근로소득세	1,053	197	392	406	58
- 기타소득세	103	19	39	40	5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보조사업자 관리 및 정산검사에 소홀함이 있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숙지와 업무연찬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지방재정법」제32조의4, 제32조의6,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 제23조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한 실무담당자 OOO 지방OOOOO OOO(현 OOOO), 실무담당자 OOO 지방OOOO OOO(현 OOO)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 요구

제 목 ㅇㅇㅇㅇㅇㅇ ㅇㅇ 지원 사업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하동군(〇〇〇〇)

조 치 기 관 하동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하동군 ○○○○○에서는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에 따라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등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표 1]과 같이 ○○○○○○ ○○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하동군 ○○○○○ 민간위탁 및 지원현황

(단위: 천 원)

사무명	수탁기관	차량현황	운영 인력	일평균 이용인원	2018	사 { 2019	걸비 2020	2021
00000 운영 지원	00 00000 00000	1대	1명	13명	31,500	31,500	31,500	32,768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2. ○○○○ 운영 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제4조, 제10조에 따르면 군수는 ○○○○○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사회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고, ○○○○○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동군 ○○○○○에서는 ○○○○○ 운영 지원 사업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에 대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이행하여 적격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 운영 지원사업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탁운영신청서도제출받지 않았으며 수탁기관 선정과 심사를 위한 선정위원회의 심사도 없이 (사)○○○○○○○ 하동군지회와 [표 2]와 같이 매년 위탁기간이 종료 되면 다시 위수탁협약만 체결하여 ○○○○○ 운영 지원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동군 ○○○○○ 위수탁 협약 체결 현황

			위탁운영		계약체결일				
사무명	수탁기관	공모여부	신청서 접수 여부 심사여부	2018 (계약기간)	2019 (계약7만)	2020 (계약기간)	2021 (계약기간)		
00000	00				'18.1.23.	'19.1.9.	'20.1.2.	'21.1.16.	
○○○○○ 운영 지원	00000	부	부	부	('18.1.1.~	('19.1.1.~	('20.1.1.~	('21.1.1.~	
正 6 시년	00000				18.12.31.)	'19.12.31.)	'20. 12.31.)	'21.12.31.)	

[출처: 하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5조 및「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6조 및「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동군 ○○○○○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수탁사무 이행을 위하여 ○○○○○ 운영 지원 사업 수탁기관인 ○○○○○○ 하동군지회에서 수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하동군 ○○○○○에서는 2012년 수탁일로부터 2021. 7. 20. 현재까지 수탁기관 ○○○○○○○ 하동군지회에서 수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처리와 수탁기관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처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하동군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조례 숙지 미흡으로 수탁기관 선정과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관련 조례를 숙지하고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②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ㅇㅇㅇ ㅇㅇㅇ조성사업 하도급 관리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000(0000)

조 치 기 관 000(00000)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표 1]과 같이 2019. 6. 24.부터 2021. 6. 24.까지 2,221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 ○○○○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표 1] ○○○ ○○○○ 조성사업 현황

시어머	계약 이 피		계약 이 뒤		니 d at	사업	설비 (백민	<u>ŀ</u> 원)	7 (1717)	시고됩시	비고
사 업 명	일자	위 치	사 업 량	계	도급	관급	공사기간	시공회사	(현공정)		
○○○ ○○○○조성사업	2019. 6. 24.	000 000 000 -00 일원	지방정원 조성 1식	2,221	1,873	347	'19. 6. 26. ~'21. 6. 24.	OOOOOO (쥐) 대표 OOO	100 (준공완료)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2. 하도급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1조 및「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제5조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발주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 구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에 따르면 시공 자격이 없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에서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이 통보되었다면, 하도급 공종에 부합되는 적정면허 보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 ○○○○ 조성사업"의 수급자인 ○○○○○○㈜이 2019. 12. 23. [표 2]와 같이 토공사 등 7개 분야의 공종을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별 전문면허 보유자에게 하도급 계약하지 않고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만을 보유한 ㈜○○○에게 하도급 하였는데도, 2020. 1. 7.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하도급 계약 위반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감사 기간 종료일(2021. 7. 20.) 까지도 이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

[표 2] 해당공종별 적정업종과 ㈜○○○의 시공자격 여부

	급계약 공종	적정 건설업종	하도급계약 건설업종	시공자격	
공 종	세부 공종		(하도급계약업체)		
토 공	토공	토공사업		부적정	
배 수 공	파형강관 부설	배수공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부적정	
호안공	전석쌓기	석공사업	대표 ○○○	부적정	

하도급계약 공종		적정 건설업종	하도급계약 건설업종	시공자격	
- 공 종	세부 공종	10 220	(하도급계약업체)	10.11	
구조물공	L형 옹벽, 연석설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부적정	
포장공	콘크리트포장, 투수블럭포장, 야자매트포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부적정	
시설물공	앉음벽, 자연석놓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적 정	
철거, 이설공	포장철거, 평상이설	구조물해체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부적정	
부대공사	토공	토공사업		부적정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3. 감독과 검사 직무 겸직 제한 위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현저하게 곤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 ○○○○○에서는 준공검사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여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2020. 12. 30. 수급자인 ○○○○○○(주)로부터 '○○○ ○○○○ 조성사업(1차분)'에 대한 준공검사원이 접수되었는데,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여 공사 감독 외의 자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같은해 12. 31. 공사감독자인 ○○○○○○ ○○○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고 같은 날준공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은 하도급계약 및 감독과 검사업무 겸직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향후에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〇〇〇〇는

- ① ○○○ ○○○○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내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적정하게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한 실무담당자 ○○○○ ○(현 ○○면사무소) ○○○○○ ○○○, 부적정하게 하도급이 관리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공사감독업무와 준공검사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한 실무책임자 ○○○○○ ○○○○○ ○○○○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훈계),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책임자 ○○○○○(현 ○○면사무소) ○○○○○○ ○○○○ 같은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② ○○○은 관련법령 준수와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③ 또한 자격이 없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한 건설업자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요구 및 통보

제 목 ㅇㅇ지구 ㅇㅇ공급사업 설치인가 등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000(0000)

조 치 기 관 000(0000)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 [표 1]과 같이 2017. 4. 11. ㈜○○○○○○(대표 ○○○) 와 933백만 원에 용역 계약하여 같은 해 4. 14. 착공하고 2018. 6. 13. 준공하였으며, 같은 해 7. 4. ○○○○㈜(대표 ○○○)과 도급액 3,628백만 원에 계약하고 같은 해 8. 12. 설계변경으로 도급액 3,755백만 원으로 변경 계약하여 2022. 3. 20. 준공 예정으로 "○○지구 ○○공급사업"(이하 "○○지구 ○○공급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지구 ○○공급사업 현황

사 업 명	계약일 위	위치	위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용역 및	도급회사	비고	
~ ↑ H 3	게크릴	TI ^I	ਾ ਜ ਰ	계	도급	관급	공사기간		(공정)
○○지구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7.4.11.	00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933	933	-	'17.4.14. ~ '18.6.12.	(㈜) ○ ○ ○ ○ ○ ○ ○ ○ ○ ○ ○ ○ ○ ○ ○ ○ ○ ○ ○	100%
○○지구 ○○공급사업	'18.7.4.	00	상수관로 매설 L=29.0km	6,849	3,755	3,094	'18.7.10. ~ '22.3.20.	○○○○㈜ 대표 ○○○	70%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2. 일반수도시설 설치에 대한 인가(행정절차) 미 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수도법」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인가신청)에 따라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사업에 해당하는 일반수도 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3항에 따라 인가청은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 ○○○○○에서 "○○지구 ○○공급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근거로 도지사로부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변경포함)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지구 ○○공급사업"을 하면서「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시설용량 1만 톤/일 이하인 지방상수도 사업에 해당되어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도면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표 2]와 같이 사업 착수 후 감사 종료일('20. 7. 20.) 현재까지 수도 사업 인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일반수도사업 인가 절차 미 이행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기간	착공일	수도사업 인가여부	비 고 (공정률)
○○○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00	상수관로 매설 L=29.0km	'18.7.10. ~ '22.3.20.	'18.7.10.	미 인가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3.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용역비용 정산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에 따르면 발주청 또는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인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전반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설계용역사업자에게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 및 제17조(검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6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에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누락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는 용역과업 성과품이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감액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강구하여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2017. 4. 11. ㈜○○○○○○(대표 ○○○)와 계약한 과업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소요되는 용역비용을 반영하였으나

수도공급시설 중 일반 상수관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기반시설1)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성과품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2018. 6. 18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과업 성과품이 계약에 위배되어 부당함에도 [표 3]과 같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반영된 용역비 25,341천 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 등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3] 실시설계 용역비 조정내역

 구 분	내 용		비고			
丁 正	ਮ 	당 초	조 정	증 감	n) <u>T</u>	
계		25,341	0	△25,341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서류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25,341	0	△25,341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4. 하도급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에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같은 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는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제2항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 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6항 및「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6조에 따르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¹⁾ 군관리계획결정 수도공급설비 : 취수,저수,정수 및 배수시설,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 및 송수시설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발주자는 첨부 서류 등 계약내용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 여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하여금 심사하여야 하고,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하도급계약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에서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하도급 공종에 부합하는 적정면허의 보유여부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 도급사가 2018. 7 31. 차수별(1차 내지 4차분) 계약하고 제출한 하도급계약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표 4]와 같이 토공사업 전문면 허㈜○○(대표 ○○○)는 포장공은 하도급 계약 할 수 없음에도 하도급계약 공종에 부합하는 전문면허의 적정성에 대해 소홀하게 검토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감사 기간 종료일(2021. 7. 20.) 까지도 이에 대한 영업정지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표 4] 하도급 계약한 전문 건설업종의 시공자격 여부

하도급	계약 공종	적정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업체	시공자격	하도급액	비율
공 종	세부 공종	역의 신설립증	아포답게 탁립제	시공사역	(천원)	(%)
 토 공	터파기·굴착 등	토공사업	토공사업	적 정	1,483,809	
포 장 공	아스팔트포장	포장공사업	㈜() 대표 ()()()	부적정	273,146	18.4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은 업무연찬 부족과 조속한 사업 착수로 인하여 수도사업 인가를 득하지 못하였고, 설계용역 과정에서 수도관로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였으나 수도관로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정산없이 용역비를 지급한 사항에 대해 환수하고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도 관거 매설 후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해 적정면허 보유자가 아닌 포장공종을 반영하게 되었으나 미흡한 업무에 대해 앞으로는 관련 법규 등 연찬을 통해 적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〇〇〇〇는

- ②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제25조를 위반하여 전문공종 외의 공종을 하도 급 계약하여 시행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등 조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③ 「수도법」제17조에 따라 조속히 수도사업 인가를 득하고, 실시설계용역비에 반영되어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비용으로 지출한 25,341천 원에 대해서도 환수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ㅇㅇㅇ ㅇㅇㅇ 기반시설 설치사업 준공검사 등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000(0000)

조 치 기 관 000(00000)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는 [표 1]과 같이 2019. 9. 16. ㈜○○○○(대표 ○○○)와 도급액 908백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같은 해 9. 19. 착공하고 2020. 5. 21. 총괄 1회설계변경으로 도급액 894백만 원으로 변경 계약하여 같은 해 5. 26. "○○○ ○○○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준공하였다.

[표 1] ○○○ ○○○ 기반시설 설치사업 현황

u d d	레아이	OI +I	이 뒤	OI -I	OI =I	OI +I	위 치	시 어 라	사업	비 (백민	<u> </u> 나원)	공사기간	시고됩시	비고
사 업 명 	계약일	위시	사 업 량	계	도급	관급	공사기간	시공회사	(현공정)					
○○○ ○○○ 기반시설 설치사업	'19.9.16.	00	○○관 L=6,842m ○○관 L=6,314m 및 맨홀 1식	1,540	894	646	'19.9.19. ~ '20.5.26.	(주)○○○ 대표 ○○○	100%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2. ○○○시설 설치에 대한 인가(행정절차) 미 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수도법」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2)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청은 일반수도사업을 인가 하면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하수도법」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와 관련도면 등을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 ○○○○○에서 수도시설에 대한 일반수도 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관계서류(도면 등)을 첨부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 도지사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한 후사업을 시행하여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 "○○○ ○○○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표 2] 와 같이「수도법」제17조에 따른 시설용량 1만 톤/일 이하인 지방상수도 사업임으로 사업착수 전 일반수도사업 인가를 받아야 하고, 아울러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와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2019. 9. 19. 사업을 착공하여 ○○○○사업 인가를 받지 않고시행하였다.

²⁾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인가

[표 2] ○○○○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 현황

и он пн	01 -1	u d 라	÷L ¬ OI	조고이	행정절차 현황				
사 업 명	위치	사 업 량	착공일	준공일	○○ 사업 인가	공공 ○ ○ 도 인가	농지전용	하천협의	
○○○ ○○○ 기반시설 설치사업	l .	○○관 L=6,842m ○○관 L=6,314m 및 맨홀 1식	'19.9.19.	'20.5.26.	미 인가	미 인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3. ○○○○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 공사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 및 제17조(검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3조(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명된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는 계약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를 통해 검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 ○○○○○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하수관거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준공 시에는 계약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 검사를 실시하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관거시공 등의 검사를 위해서는 CCTV 검사 등을 통하여 관거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불량한 부분이 발견 될 경우 보완시공 등 조치하여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 ○○관거 공사 시에 외부에서 확인이 곤란한 ○○관거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CCTV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며, 준공검사 시에도 하수관거 시공에 대한 CCTV 영상검사의 확인 없이 2020. ○. ○. [표 3]과 같이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감사 종료일(2021. 7. 20.)에 하수관거 시공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 ○○○○○로부터 CCTV 영상조사 결과물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사진 1] 과 같이 하수관거 내부에 하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잡석과 관거 접합부의 일부가 불량하게 시공된 곳이 있음에도 보완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

[표 3] ○○○○ 준공검사 실시현황

사업명	검사내역	검사완료일	검사자	입회자	비고
000 000	○○관로 L=6,314m	2020.5.20.	준공검사자	공사감독관	
기반시설 설치사업	맨홀 등 1식	2020.0.20.	000(0000)	000	

[출처 : ○○○ 제공자료 재구성]

[사진 1] ○○○○ 잡석 존치 및 관거 이음부 부실 등 시공 현황

이음구간 충진 부적정	관거 이음부 시공 부적정
관 내부 잡석 미 제거	관거 이음부 접합 상태 불량
관거 이음부 시공 부적정	관거 이음부 시공 부적정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은 ○○○시설 매설을 위해 ○○○ 인입 협의와 도로점용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업무연찬 부족으로 ○○○ 사업 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관로 시공의 적정성 확인에 대해서는 CCTV 품질 성과품을 통한 관리 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관거 이음 검사량이 많아 확인이 미흡하였음을 인정하며 지적한 불량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향후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〇〇〇〇는

② 품질검사 확인 없이 준공처리한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CCTV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관거 접합부 시공이 불량한 구간은 보완시공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 ○○지도계약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000(00000 등 7개 과)

조 치 기 관 000(00000 등 7개 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 등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도급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1항, 제73조(건설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제1항에 따르면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대상 건설공사도급인)에따라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미만인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의 [별표 18] '2. 기술지도계약'에 따르면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75조(과태료)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 등에서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당해 공사의 착수 전에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확인하여야 하고,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하여야 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 등에서 감사대상('2017. 9. ~ 2021. 7.) 기간에 시행한 351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 체결에 대해 감사한 결과 ○○○○○ 등 7개 과의「○○ ○○시장 ○○○○ 설치공사」등 54건은 [별표]와 같이 계약

상대자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고 공사를 준공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 ○○○○○ 등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에도, 준공 된 47개소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79,98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진행중인 7개소의 건설공사 도급인에 대해서도 44,860천 원을 감액하거나 정산 등 조치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은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관련 법령 숙지 부족 등에 따라 발생한 사안으로 공사를 준공하여 이미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통해 환수 조치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〇〇〇는

- ①「산업안전보건법」제73조를 위반한 "〇〇 〇〇시장 〇〇〇〇 설치공사"등 54건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환수·정산 및 과태료부과 등 조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② 앞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 체결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에 대해 별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의 ○○지도계약 미체결 현황

No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도 급 지		공사기간	계약 업종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천	금액 원)	시행 부서
	54 건	(122)	회사명	대표			(천원) 182,780	<u>감액</u> 5,563	환수 30,993	<u> </u>
1	○○○○시장○○ ○○ 설치공사	529	000000㈜	000	'18.10.02.~ '19.04.05.	건축	6,553	-	1,311	00000
2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치공사)	470	(주)〇〇〇	000	'19.08.28.~ '19.12.20.	금속구 조물	4,920	_	984	00000
3	○○ ○○○ 체육관 건립사업(건축)	1,757	例00000	000	'20.12.03.~ '21.08.29.	종합 (토건)	27,814	5,563	-	00000
4	2016년 OOO 농어촌OOOO 개발사업 시설공사	2,008	(A)OOOO	000	'16.04.08.~ '18.04.09.	종합 (토목)	34,090	-	6,818	00000
5	00지구 농어촌 0000 구역 확장공사	251	(20000	000	'17.04.13.~ '17.09.09.	전문 (상하 수도)	3,741	-	748	00000
6	00지구 농어촌 0000 구역 확장공사	432	000(주)	000	'17.04.18.~ '17.12.13.	전문 (상하 수도)	5,880	-	1,176	00000
7	○○○면 ○○지구 ○○○○ 개발사업	205	㈜0000	000	'17.06.21.~ '17.11.30.	전문 (상하 수도)	3,215	-	643	00000
8	○○지구 농어촌 ○○○○ 급수구역 확장공사	200	0000㈜	000	'17.09.14.~ '17.12.12.	전문 (상하 수도)	2,849	-	570	00000
9	OO지구 농어촌 OOOO 공급사업	6,949	0000㈜	000	'18.04.11.~ '21.03.25.	종합 (토목)	51,136	-	10,227	00000
10	○○마을 ○○구역 확장공사	484	(주)〇〇〇〇	000	'19.08.02.~ '20.12.24.	전문 (상하 수도)	6,347	-	1,269	00000
11	○○·○○지구 지방○○도 공급사업 국도구간 공사	1,631	0000㈜	000	'19.10.21.~ '21.03.31.	전문 (상하 수도)	20,325	-	4,065	00000
12	○○(○○)지방상 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303	㈜0000	000	'20.04.17.~ '20.09.29.	전문 (상하 수도)	4,171	-	834	00000
13	○○지구 농어촌○○○ 급수구역 확장공사	316	(A)0000 00	000	'20.05.15.~ '20.11.30.	전문 (상하 수도)	5,195	-	1,039	00000
14	○○지구 농어촌마을○○도 정비사업 (추가분)	291	0000	000	'19.03.20.~ '19.10.15.	전문 (상하 수도)	2,960	-	592	00000
15	○○마을 ○○○○장 이설사업	596	000000	000	'18.04.23.~ '20.06.09.	종합 (토목)	3,584	-	717	00000

No	사 업 명	사업비	도 급 지	4	공사기간	계약	계 상 된 안전관리비		금액 원)	시행
NO	AI EI Q	(백만원)	회사명	대표	0/1/17	업종	(천원)	감액	환수	부서
16	○○ 생활도로 개설공사	251	000000㈜	000	'18.02.07.~ '19.04.05.	종합 (토목)	2,609	_	522	00000
17	○○○ 시가지 ○○○ 3구간 인도정비공사	384	㈜0000	000	'18.05.03.~ '19.06.20.	종합 (토목)	4,469	-	894	00000
18	○○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371	0000㈜	000	'18.12.18.~ '19.09.17.	종합 (토목)	5,069	-	1,014	00000
19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15	0000㈜	000	'18.09.14.~ '19.07.17.	종합 (토목)	2,888	-	578	00000
20	000 시가지 000 4구간 인도정비공사	264	0000㈜	000	'19.03.14.~ '20.09.03.	종합 (토목)	2,870	-	574	00000
21	2019 〇〇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11	(A)000000	000	'19.03.14.~ '19.06.24.	종합 (토목)	2,707	-	541	00000
22	OOOOO OO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132	0000(주)	000	'20.02.10.~ '20.06.12.	석공사 업	1,666	-	333	00000
23	○○ 도시계획도로 (중로○-○호선) 개설공사	384	0000㈜	000	'21.03.17.~ '21.09.12.	종합 (토목)	10,042	2,008	_	00000
24	○○ 도시계획도로 (중로○-○호선) 개설공사	440	0000㈜	000	'21.03.25.~ '21.09.20.	종합 (토목)	9,823	1,965	_	00000
25	○○○다목적광장 부지조성사업	262	(A)0000	000	'19.07.05.~ '20.03.30.	종합 (조경)	5,022	_	1,004	00000
26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95	0000㈜	000	'21.05.20.~ '22.11.18.	전문 (철콘)	3,038	-	608	00000
27	000 정비사업	2,209	(A)0000	000	'15.05.19.~ '18.05.17.	종합 (토목 건축)	29,420	-	5,884	00000
28	0000 정비사업	1,197	0000(A)	000	'15.05.18.~ '17.08.01.	종합 (토목 건축)	15,874	-	3,175	00000
29	000 정비사업	1,347	㈜이	000	'17.01.02~ '18.05.02.	종합 (토목 건축)	19,548	-	3,910	00000
30	000 정비사업	946	㈜ 000000	000	'17.01.02.~ '18.10.30	종합 (토목 건축)	14,867	-	2,973	00000
31	○○○(2) 정비사업	338	0000㈜	000	'17.09.01.~ '18.10.31.	종합 (토목 건축)	4,915	-	983	00000
32	○○○ 정비사업	705	0000(주)	000	'18.12.31.~ '19.12.20.	종합 (토목 건축)	14,304	-	2,861	00000
33	○○○(○○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353	00000(A)	000	'20.04.17.~ '21.02.16.	종합 (토목 건축)	5,747	-	1,149	00000

No	사 업 명	사업비	도 급 지	4	공사기간	계약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정산 (천		시행
NO	νгн σ	(백만원)	회사명	대표	0시시간	업종	(천원)	감액	환수	부서
34	○○세천 개보수공사	394	㈜000000	000	'20.11.12.~ '20.05.10.	전문 (석공)	6,421	-	1,284	00000
35	○○소하천 정비사업	789	00000㈜	000	'21.01.27.~ '21.05.06.	종합 (토목 건축)	15,484	-	3,097	00000
36	○○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7,797	0000例	000	'18.11.01.~ '21.10.15	종합 (토목)	67,158	13,432	-	00000
37	○○○○(○○강) 조성사업(추가 분)	5,982	〇〇〇〇㈜	000	'20.05.20.~ '22.11.18.	종합 (토목 건축)	31,131	6,226	-	00000
38	○○○ 물양장 정비공사	316	例00 0000	000	'18.03.27.~ '18.09.22.	전문 (수중)	4,417	-	883	00000
39	○○○ 선착장 정비공사	206	(주)〇〇〇〇	000	'18.03.30.~ '18.06.25.	전문 (수중)	3,361	-	672	00000
40	○○○(○○지구) 재해복구사업	240	0000㈜	000	'21.03.15.~ '21.05.26.	전문 (토목)	3,666	_	733	00000
41	2018년 ○○○○도 신설사업(○○○ ○~○○○○지구)	173	○○○ 산림조합	000	'18.05.03.~ '18.09.06.	산림	2,158	-	432	00000
42	2018년 ○○로 정비사업(○○○ 외 3개소)	112	○○○ ○○조합	000	'18.10.31.~ '18.12.26.	산림	1,419	-	284	00000
43	2019년 OO임도 신설사업(OOO O~OO지구)	101	000 00조합	000	'19.04.05.~ '19.06.04.	산림	1,473	-	295	00000
44	2019년 ○ ○ 임도신 설사업(○ ○ ○ ○ ~ ○ ○ ○ ○ 지구)	269	㈜○○	00	'19.04.17.~ '19.07.23.	산림	3,859	-	772	00000
45	2019년 등산로 정비공사(○○○ 등산로외 2개소)	104	○○○ ○○조합	000	'19.05.28.~ '19.06.20.	산림	1,247	-	249	00000
46	2019년 간선○○ 신설 및 보수사업(○○○ ○우회임도)	188	OOO OO조합	0	'19.09.16.~ '19.12.23.	산림	1,942	-	388	00000
47	2019년 태풍 ○○ 피해지 재해복구 사업	133	㈜○○○	000	'20.02.14.~ '20.05.08.	산림	1,512	-	302	00000
48	2020년 간선 〇〇 신설사업(〇〇 〇〇-〇〇 〇〇)	358	(주)○ ○ ○	000	'20.05.07.~ '20.10.15.	산림	5,224	-	1,045	00000
49	2020년 작업(간선)임도 신설사업(〇〇〇〇 ~〇〇〇〇지구)	122	OOO OO조합	000	'20.06.08.~ '20.10.19.	산림	4,988	-	998	00000
50	2020년 7.28.~8.11.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피해 복구공사 (○○○○지구)	243	000 00조합	000	'21.02.09.~ '21.06.08.	산림	4,178	-	836	00000

No	사 업 명	사업비	도 급 자		공사기간	계약 업종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정산금액 (천원)		시행
110	D	(백만원)	회사명	대표	0.11.15	업종	(천원)	감액	환수	부서
51	2020년 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구름다리 신설사업	2,180	㈜() () () () () ()	000	'20.03.03.~ '21.03.26.	종합	21,338	-	4,268	00000
52	○○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토목)	2,591	㈜○○○	000	'17.12.05.~ '20.11.23.	토목	27,263	-	5,453	00000
53	○○○○ 치유의 숲 조성사업 (건축및토목)	3,318	㈜()()()()()()()()()()()()()()()()()()()	000	'20.06.25.~ '22.06.24.	건축및 토목	60,188	12,038	_	00000
54	○○○자연○○림 보완사업 (건축및토목)	1,416	(쥐)○ ○ ○ ○ (쥐)○ ○ ○ ○	000	'20.09.25.~ '21.09.24.	건축및 토목	18,141	3,628	-	00000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정산금액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 토지소유자 동의율 확인 부적정

소 관 기 관 ㅇㅇㅇ(ㅇㅇㅇㅇ)

조 치 기 관 000(00000)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지형도면 고시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표 1]과 같이 주거용지를 확보하여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공간창출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2018. 7. 26. ○○(○○○○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3하였고, 주민제안에 따른 입안을 통해 2020. 5. 21. ○○(○○○○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4)하였다.

[표1] ○○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현황

구 역 명	위 치	면 적 (m²)	결정일	변경결정일	비고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리, ○○리, ○○리 일원	277,255	2018. 7. 26.	2020. 5. 21.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3) ○○○} 고시 제○○○○-○○호(2018. 7 .26.)

^{4) ○○○} 고시 제○○○○-○○호(2020. 5. 21.)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같은 법 제19조의 2(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6-4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5)하고 있다.

따라서 ○○○ ○○○○○는 주민제안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하려는 경우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 주택건설사업자인 ㈜○○○○이 공동주택용지의 효율적 이용과 단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용지 ○○블럭을 분할하고 건 폐율을 상향6)하고자 2020. 4. 10. 군관리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을 했을 때, ○○블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동의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했어야 하나, [표 2] 및 [사진 1]과 같이 획지분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하려는 ○○-○블럭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만 받아 주민제안 충족 동의율 66.67%에 미달하는 32.17%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를 인정하여 2020. 5. 21. ○○(○○○○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실이 있다.

^{5) 2020.2.28.}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제안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부지(지구단위계획상 해당 부지가 포함된 용지, 가구 또는 획지 등) 면 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함

⁶⁾ 주민제안 내용: 27블럭 → 27-1, 27-2, 27-3블럭 획지 분할, 건폐율 20% → 30% 상향

[표 2]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 동의율 현황

당초	E(A)	변경	변경 동의서 기		기준동의면적	비고
구분	면적(m²)	구분	면적(m²)	제출 면적	(A×2/3이상)	
7=		○○블럭	23,686			
		○○-○블럭	8,386	미제출	23,686×2/3=	
27블럭	23,686	○○-○블럭	7,620	7,620	15,790.67㎡ 이상 동의 시 주민제안 요건 충족	미충족
		○○-○블럭	7,680	미제출	이 우민제안 요건 중쪽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 1]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 지역현황

변경 전	변경 후 (○○-○블릭 동의서 제출지역)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 ○○○○○○ 주민제안으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 시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 동의율 충족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공동주택 용지 ○○블럭이 아닌 획지 분할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하려는 ○○-○블럭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 동의율로 잘못 판단하는 등 업무연찬 부족으로 발생했던 사항이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는

- ②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ㅇㅇㅇ ㅇㅇ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ㅇㅇㅇ(ㅇㅇㅇㅇ)

조 치 기 관 ㅇㅇㅇ(ㅇㅇㅇㅇ)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그리고 2013. 12. 12. ○○○○와 사업시행자인 ○○○○ ○○(현재 ㈜○○○○ ○○)은 『○○○ ○○공원 조성사업 민자유치 사업시행 협약서』를 작성하고 ○○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체험과 휴양기능이 조화된 건강테마 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사일 현재(2021. 7. 12.) 사업추진 중이다.

[표 1] ○○○ ○○공원 조성계획 상업시설 변경현황

구		분		부지면적(m²)	건 축 면 적(m²)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 모	n) <u>Tr</u>
합			계	2,240	4,792.06	7,062.16	_	증 2,240
상	업	시	설	2,240	1,111.65	1,485.20	_	민자유치시업
	상		가	2,240	1,111.65	1,485.20	지하1,지상3층,1동	

[사진 1] ○○○ ○○공원 조성계획 변경 도면(토지이용계획)

변경 전	변경 후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2. 행정재산에 사용수익허가 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제2항에는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전망대 및 보행교) 축조를 위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 ○○○ 2018. 7. 4. ㈜○○○ 대표이사 ○○○이 행정재산인 ○○○ ○○○ ○○○ 산○○번지(임야 1,718㎡)에 ○○○○○ 기초 및 교각 등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제한에 관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2018. 7. 6. 사용수익허가?)한사실이 있다.

⁷⁾ 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호(2018. 7. 6)

[사진 2] ○○○ ○○공원 공원사업계획 및 기초공사당시 항공사진

공원사업계획서(2018. 6.)	항공사진 (교각 기초 3개 설치 중)

[○○○ 제출자료, ○○○○ 스마트 공간정보 재구성]

3. 행정재산 용도폐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규칙」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 ○○○○○에서 2019. 6. 7. 2019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자료제출 협조 요청8) 공문을 전 실과에 통보하면서 990㎡이상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 원 이상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임을 알린 바가 있다.

따라서 ○○○ ○○○○○는 990m²이상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 원 이상인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용도폐지 하여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 사업시행자인 ㈜○○○가 ○○○○ 문중소유의 ○○○ ○○○ ○○○ 산○○번지 일부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워지자 2018. 2. 12. 토지소유자 ○○○(문중대표)로부터 행정재산으로 토지를 매입(금액 12,713천 원) 하였으며, 2019. 7. 8. ㈜○○○○가 ○○○ ○○○ ○○○ 산○○번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실무담당자 ○○○○○○ ○○○는 같은 해 7. 29.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방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8. 8.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여 ○○○○○로 이관 후 ㈜○○○○에 수의계약(금액 14,178천 원)으로 매각하였다.

4. 민간시행 사업계획서 검토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 ○○공원 조성사업 민자유치 사업시행 협약서』제2조(주요 사업내용)에 따라 공원은 공공부분 시설에 해당하며 제10조(공사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행 시 "○○○"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 ○○공원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건축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에 제출하고 "○○○"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공공부분 조성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약되어 있다.

따라서 ○○○ ○○○○○는 건축물의 행위허가 시에 사업시행자가 건축공사를 추진할 때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로 인해 ○○○ 군립공원의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지 등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 사업시행자인 ㈜○○○○ ○○의 녹차음식점 신축공사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건축공사로 인해 ○○○ ○○공원 경관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2019. 7. 9. 사업시행자의 건축공사 준공 이후 ○○○이 일부 훼손된 구간을 포함하여 공원구역 경관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진 3]과 같이 『○○○ ○○공원 조경공사』를 발주하여도급액 325,330천 원으로 (유)○○○○ ○○○과 같은 해 8. 28. 계약하고 같은해 9. 2.에 착공한 뒤 같은 해 12. 20.에 준공하였다.

[사진 3] ○○○ ○○공원 현장사진



[출처 : 드론 현장사진 촬영(2021. 7. 15.)]

관계기관 의견

○○○ ○○○○는 관련 법령 숙지 미흡으로 공작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처리하였고, 적극적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 또한 업무연찬 부족에 의해 발생했던 사항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〇〇〇〇는

 OOOOO), OOOOOO OOO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훈계), 감독책임자 OOOOOO OOO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3호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